

연구보고서 2006

#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 방안

《研究陣》

---

연구위원 : 표창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목 차

I. 인권의 의미와 경찰업무와의 관련성 .....	1
1. 인권의 개념 .....	1
2. 경찰업무 및 환경의 특성과 인권 .....	3
3. 과거 한국 경찰환경의 특수성 .....	4
4. 경찰수사와 인권침해 .....	6
5. 경찰의 인권 보호 향상 노력 .....	9
II. 경찰인권의식 향상의 필요성 .....	13
1. 사회적 요구와 경찰 현실 및 인식간의 차이 .....	13
2.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 준수 .....	16
III. 경찰업무와 관련된 국제 및 국내 인권 규범 .....	17
1. 국제 인권규범 .....	17
2. 국내 인권규범 .....	27
IV.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와 외국의 사례 .....	33
1.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경찰 인권교육” .....	34
2. 국제사면위원회 제정 「법집행 공무원을 위한 10가지 기본 인권기준」 .....	56

3. 미국의 경찰 인권교육 .....	72
<b>V. 결 론 - 한국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 방안 .....</b>	<b>78</b>
1. 개 관 .....	78
2. 한국 경찰 인권의식향상 방안 .....	79
<b>&lt;부록1&gt; 국제인권 규범 .....</b>	<b>92</b>

### < 표 차 례 >

<표 1> 유치장 환경개선실적(2002년) .....	10
<표 2>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실적(2002년) .....	10
<표 3> 경찰대상 인권침해 진정사례 사유별 현황 .....	13
<표 4> 소년사범의 경찰조사에 대한 만족도 .....	15
<표 5> 경찰조사에 대한 불만 사유 .....	15

### < 그 립 차 례 >

[그림 1] 인권교육의 목표 체계도 .....	40
[그림 2] 인권친화적 경찰문화의 전략 .....	87

## I. 인권의 의미와 경찰업무와의 관련성

### 1. 인권의 개념

‘인권’이라는 용어는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시민이 국가권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느낄 때에도, 학교나 군대 등 단체 내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에도, 때로는 같은 개인끼리 다툼이 생길 때에도 ‘인권이 침해되었다’ 혹은 ‘인권을 보장하라’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소리 높여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인권을 행사하는 시위대에게 인근 고등학교에서는 너무 시끄러워 ‘학습할 권리’라는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시위금지를 요청하는 등, 침해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인권’이란 무엇일까?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견해는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 혹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인권의 의미 속에는 서로 다른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18세기 서구에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등 법적 권리를 인권으로 생각하던 경향에서 출발한 인권의 의미는 정보통신이 발달한 20세기 말부터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사진 등 과거에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보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인권의 개념과 그 보호 범위 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해 왔다. 하지만 어떠한 시대 어느 장소에서건 변하지 않는 것은 ‘성별, 인종, 신체적 특징 등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는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 자유와 권리가 부여’되며 ‘함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문제는 ‘다수 혹은 전체를 위한 소수 혹은 개인의 희생’ 또는 ‘더 큰 인권을 위해 상대

적으로 작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가 등 현실에서 발생하는 판단하기 어려운 갈등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인권'이 먼저냐 '국권(國權)<sup>1)</sup>'이 먼저냐 하는 논란은 매우 오래된 논쟁거리이면서 아직도 명백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주제이다. 인권의 절대성을 믿는 이들은 '인권이 국권에 앞선다'<sup>2)</sup>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존립과 번영이 없다면 인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는 명제 하에 개인의 자유의사와 달리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기관의 강제력 사용 등이 허용되고 행해지고 있다. '절대적 인권'에 해당되는 생명권 역시 사형 제도를 통해 국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반면에 인종청소를 자행하는 르완다 내전이나 코소보 분쟁 혹은 동티모르 사태 등 특정 국가 내의 문제에 UN의 평화유지군이나 NATO 등 국제사회가 개입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주권 침해'적인 개입이 '인권 옹호'라는 절대적 가치로 인해 그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기도 하다. 때로는 국제기구가 아닌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특정국가에서 타 국가의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며 무역제재 등의 내정간섭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향을 '신개입주의(New Interventionism)'이라 칭하기도 한다. 문제는 인권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이상론과 국가의 존립과 번영이라는 현실론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내는가 일 것이다. 이는 대체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인식되는 '법'에 의해 구현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의 절대성과 함께 "공공의 이익이나 다른 인권의 보호를 위해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인권의 본질이 아닌 일부에 한해 그 침해가 허용된다"는 예외성을 인정하고 있어(헌법 제 37조) 우리사회가 합의하는 '인권과 국권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권 관련 논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법 역시 인권을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인권위원회법 제2조 1호).

인권위원회법에 정한대로 우리는 국제적 인권규약과 관습법들을 준수해야하는데, 이

1) '국권'이란 '국가의 권리'로 풀어 쓸 수 있는데 이는 국가는 그 국내문제에 관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주권원칙'과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내정불간섭 원칙'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조효제, "인권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 강의안 시리즈3 [검찰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2002. 12, p.3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계인권선언문]과 그 정신에 따라 작성된 국제인권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파괴와 학살 등 인간의 잔혹성을 목격한 국제사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세상 누구에게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UN회원국들의 공동 결의로 1948년 12월 10일 이 [세계인권선언문]을 공표하였으며, 1966년에는 그 내용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속칭 A규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속칭 B규약)”으로 채택되어 규범력 있는 국제인권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은 1990년 세계인권선언 및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 모두에 가입하였다.

## 2. 경찰업무 및 환경의 특성과 인권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면 경찰업무 그 자체가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이 된다. 즉 범죄나 재해, 사고 등으로부터 주민과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순찰활동이나 미아를 보호하고 부모를 찾아주는 일 등. 그러나 경찰업무가 그렇게 단순하고 명쾌한 상황 하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흥분한 가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보면 가해자가 인권 침해한다고 소리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집회를 해산하거나 도로점거를 막으려다 보면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사회질서를 해치고 개인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아동 성폭행 용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다보면 피의자의 방어권 인정을 위해 피해자와의 대질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한 마디로 경찰업무의 상당부분은 ‘법집행과 인권침해 사이의 매우 위태로운 외줄타기’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법집행자로서 경찰관들은 그들의 고객인 공중과 함께(with)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치해(over against) 있는 인간행위의 감시자로서 이해되는 업무의 성격상 시민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늘 발생한다. 경찰관들은 빈번히 그들의 법집행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거

의 지원을 받지 못해 만약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결국 의지할 곳은 다른 경찰관들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다. 사회생활과 교제의 자리에는 간혹 법의 위반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경찰관이 있다는 것은 그 경찰관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문제를 야기하게 되기도 한다. 아울러 경찰관들은 자신의 직업상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 사교적인 성격의 모임이 상담이나 불만을 털어놓는 기회로 변하게 됨을 종종 발견하게 되고 때때로 불만을 다름 아닌 경찰에 관한 것인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교적 상황에서 경찰의 불친절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면 경찰은, 그들 자신이 직접 책임이 없는 행위 때문에 대중의 적대감의 대상이 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경찰은 통상적인 사교적 접촉을 꺼리고, 자신의 경찰동료들이 덜 이상하고 덜 위협적이며 훨씬 더 사람을 편하게 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교대근무제와 비정기적인 휴무도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경찰은 그들이 봉사하는 대상인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겨 이로 인해 ‘포위되어 있다는 의식’(siege mentality), ‘우리-저들’이라는 의식(us-them mentality)이 생겨나고, ‘저들’은 ‘우리’에 대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협조를 제공하는지에 의해 다시 구별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저들’ 의식이 지배하게 되면, 충성(忠誠, loyalty)이라는 덕목이 중시되며, 이런 충성은 동료경찰관을 보호해주는 소위 ‘침묵의 규범’(code of silence), ‘침묵의 푸른 벽’(blue wall of silence)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찰업무와 환경의 특성상 경찰관은 그 어느 누구보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지식이 높아야 하며, 인권침해를 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 3. 과거 한국 경찰환경의 특수성

경찰은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경찰 스스로에 의한 인권침해는 그 피해자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히고 쉽게 구제받지 못한다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강력한 군국주의 치하에서 식민경찰에 의해 갖은 악행과 인권침해로 고통 받은 이래 광복이후에도 건국초기의 사회혼란과 이념적 갈등 등으로 인해, 한국동란 이후에는 분단으로 인한 긴장상황으로 인해, 20세기 후반부에는 정치 불안으로 인해 줄곧 인권이나 민주성과 봉사성보다는 사회 안정과 질서 확립을 위한 효과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중시해 왔다. 그러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하에서 우리경찰은, 광복직후에는 국가의 기반 수립을 위해 헌신한 건국경찰로, 한국전쟁 당시에는 몸 바쳐 나라를 구한 구국경찰로, 이후 남북대치 상황하의 혼란기에는 열과 성을 다해 나라를 지킨 호국경찰로 그 사명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일제시대부터 따라 다니는 정치경찰, 권위주의 경찰, 인권침해 경찰의 꼬리표를 떼 내지 못해 왔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내기 위한 경찰의 노력도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으나 1986년 6월 부천경찰서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가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 및 1987년 1월 14일 서울 남영동 경찰청 대공 분실에서 발생한 서울대학생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sup>3)</sup> 등으로 인해 ‘고문 경찰’의 이미지가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특히 당시 군사독재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시위와 항의를 경찰력으로 막아 보려던 정권의 태도로 인해 경찰력은 온통 시위진압과 시국사범 검거와 동향파악 및 조사에 동원되었고 이로 인해 거리 곳곳에서 발생한 경찰과 시민의 조우는 대부분 불쾌하고 적대적이었다.

당시 경찰의 인권침해와 뒤이은 축소 조작 및 은폐 기도는 결국 전 국민적 항거를 초래하였고 국민의 공복이며 인권지킴이어야 할 경찰력을 오용,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저항을 잠재우려던 군부독재정권은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경찰을 인권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권력은 망하고야 만다는 역사의 교훈을 실감한 것이다.

3) 6월항쟁 이야기, <http://www.610.or.kr/story/evolve.php>

## 4. 경찰수사와 인권침해

경찰의 인권침해는 주로 범죄수사, 불심검문, 시위진압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범죄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며 경찰 문화 및 관행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모범적인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그나카르타(대헌장)”, “권리장전”의 본고장으로서 형사절차 등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시민인권보호에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영국에서도 1980년대 중반까지 고문 및 강압수사(Guilford Four, Birmingham Six 사건 등<sup>4)</sup>)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도 경찰의 인종차별 및 가혹행위 시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 중 하나가 LA 폭동의 원인이 된 로드니 킹 사건인데, 1991년 3월3일 새벽 경찰단속에 걸린 뒤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아나던 로드니 킹(당시 27세)을 차에서 끌어낸 4명의 백인 경찰관들이 바닥에 쓰러진 킹을 무차별 집단 구타했고 그 모습을 인근에 사는 조지 할러데이라는 사람이 비디오로 촬영,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 제공해 전국에 방영되며 사건화 되었다. 이 테이프는 4명의 백인경찰관이 흑인 1명을 5만볼트의 고압전기 충격을 가하는 전기충격총(일명 Taser)으로 가격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81초 동안 56회나 곤봉으로 구타하고 발로 차 다리와 얼굴뼈를 부러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줘 미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sup>5)</sup> 최근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안즈에서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며 장기간 구호활동과 치안유지에 투입되었던

4) Guilford4는 1974년 영국 런던 근교의 Guilford와 Woolwich 지역의 선술집(pub)을 폭파한 혐의로 체포된 4명의 테러용의자를 일컫는 말로 이들은 당시 Surrey 지방경찰청의 수사로 체포되어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목격자 진술의 조작의혹이 끊이지 않아 내려진 법원의 재수사 결정으로 행해진 Avon & Somerset 경찰청의 재수사 결과 당시 수사경찰관들의 목격자 조작 및 피의자 고문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1989년 고등법원에서 재심이 열려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Birmingham6는 1975년 Birmingham지역에서 행해진 Guilford4와 유사한 폭탄테러공격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 유사한 목격자 진술조작 및 가혹행위가 드러나 1991년 재심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지칭한다. Reiner, Robert., *The Politics of The Police 2nd Edi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p.83-5 참조.

5) 중앙 USA 특집, “LA 폭동 그리고 10년, 폭동 촉매역할 로드니 킹 사건”, 2003. 4. 25

경찰관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늙은 흑인 전직 교사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장면이 보도되어 로드니 킹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sup>6)</sup>

우리나라에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마저 수사도중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2002년 11월 살인사건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서울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구타당한 채 숨진 소위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sup>7)</sup>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검찰은 90년대 중반까지 검찰 소속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검찰에서만 행할 수 있다는 규칙을 운용하며<sup>8)</sup> 수사의 유일한 주재자<sup>9)</sup>로서 검찰 외 어느 누구의 수사도 받지 않고 있어<sup>10)</sup>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으며 어느 누구의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3년에 들어서서도 같은 법조인인 변호사가 과거 학생운동시절 검사의 지시 하에 고문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도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sup>11)</sup>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의 사례가 대표하듯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절대권력으로서의 검찰이 존재하는 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시비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경찰수사의 감독자요 통제권자인 검찰 스스로가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마당에 경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학계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 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2)</sup>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용의자에 대한 강한 심증이 형성되는 사건에서, 자백만 받으면 용이하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혹행위의 유혹에서 벗어

6) Harry Mount "New Orleans Police beat up black man", Daily Telegraph, 11/10/2005

7) [중앙일보] 2002-11-06 “현직검사 구속영장 불명에” 기사 참조.

8) 법무부직원과 관련된 사건수사시 즉시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휘하여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관계직원사건처리예규] (대검찰청 예규)는 국민으로부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 및 사건왜곡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불식한다는 취지에서 1995. 3. 10.자로 폐지되었다.

9) 헌법 제12조 3의 검사의 영장신청 독점권,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 196조의 수사 및 수사지휘 독점권 등.

10)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검찰고위간부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실시의 경우는 예외이다.

11) [세계일보] 2003-03-15 "김원치검사가 고문지시 했다"

12) [조선일보] 2003-02-20, “검찰서 자백내용 유죄증거 인정” 형사소송법 위헌심판 제청

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 제도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오히려 검찰제도가 경찰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강변하지만, 그 스스로가 수사라는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 결코 “객관적 입장에서” 경찰수사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어린 아이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검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같은 입장으로 참여하다보니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형성된 수사관의 피의자에 대한 의심인 심증을 공유하게 되어 경찰수사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대로 검찰 수사 및 기소로 제약 없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고한 경찰관을 살인범으로 몰았다가 진범이 잡히는 바람에 무죄판결을 받은 “김기웅 순경 사건”, “대법원 1998. 4. 10, 97도3234 뇌물수수”, “대법원 84.03.13 선고 84도36 판결 강간치사”, “대법원 90.02.13 선고 89도2205 판결 살인”, “대법원 86.09.09 선고 85도641 판결 강도살인”, “대법원 87.02.10 선고 86도2399 판결 존속살인, 절도, 횡령” 및 “대법원 77.04.26 선고 77도210 판결 살인 등” 판례들은 모두 이러한 “강압적 자백”의 증거가치를 배제한 판결들로 일부는 경찰에서 행해진 강압적 자백이 검찰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진 사건들이고 일부는 아예 검찰에서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 수사한 사건들이다. 2002년에는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주)농협유통 전 대표이사 이은성씨가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3,4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sup>13)</sup> 형사소송법 309조가 분명히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1998.4.10 97도 3234” 판례에서도 “강압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가 그 의문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수사에 의한 무리한 자백의혹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서는 “자백=유죄”에 대한 자신감을 가능하게 해 준 검찰의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외국의 검찰은 Prosecution, 즉 기소를 행하는 기관이다.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에서조차 검찰은 그 스스로는 수사를 행하지 않고 오직 경찰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하기에 검사가 고문과 가혹행위의 오물을 뒤집어쓰지는 않는다. 아울러 수사라는 진흙탕에서 한 발 떨어져 지휘하고 감독하고 통제하기에 경찰도 함부로 가혹행위와 고문을 할 수 없는

13) [동아일보] 2002-12-25 농협유통 前대표 이은성씨 “검찰이 가혹행위” 손해소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복원되어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을 통해 검찰작성 조서의 증거능력도 경찰작성조서의 증거능력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공판정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가 복원되어 수사과정에서 무리한 자백을 이끌어낼 여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 5. 경찰의 인권 보호 향상 노력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권위주의가 붕괴되면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 없이는 경찰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으며 경찰의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갔다. 영국과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특히 냉전 종식 후 1980년대부터 주민에 대한 봉사과 치안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중심축으로 삼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라는 새로운 경찰 패러다임이 확산되었으며,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찰활동이 증대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인권 대통령’으로 잘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1990년대 말부터 정부의 인권중시 정책이 마련된 후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찰에서도 본격적인 인권중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를 확대 실시하고 감청 등 수사상 통신제한 조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각종 인권보호 체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오던 유치장의 시설과 처우형태를 대폭 개선하여 유치인 입감시 ‘인권위원회 진정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고지를 명문화하고 여성 및 장애인의 유치에 있어 우선 배려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유치인의 신체검사에 대해서는 여성부, 인권위원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받아들여 신체검사용 차단막을 설치하고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대폭 개정, ‘외표검사’

를 신설하여 인권침해요소를 사전 방지하는 등 유치인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인권친화적으로 유치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유치실 바닥을 온돌로 교체하고 화장실 시설보완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전국 경찰관서에 구축된 인터넷 망을 활용한 유치인 화상 면회제를 활성화하여 원격지 면회인 및 장애인의 불편해소에 힘쓰고 있다.

<표 1> 유치장 환경개선실적(2002년)

(단위: 건)

구분	총계	화장실		난방시설 (온돌방)	자해 예방	환기 시설	면회실	탈의실	금속 탐지기	기타
		수세식	좌변기							
실적	1,294	183		138	200	79				

※ 사용예산: 총 13억 2,775만원(유치실 5억2,135만원, 화장실 1억5,587만원 등)

(출처: 경찰백서 2003)

<표 2>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실적(2002년)

(단위: 건)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6	47	4	3	2	0	15	0	4	4	1	37	7	10	2

(출처: 경찰백서 2003)

특히 최근에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인권경찰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경찰청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등 아래와 같이 종합적인 인권보호 체제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sup>14)</sup>:

14)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인권보호 종합관리 추진체계 구축]

종합적인 인권 전담부서 및 자문·조정기구 설치·운영

- ▶ 인권보호센터 : 피의자·피해자보호 등 인권시책 전담 부서
- ▶ 인권수호위원회 : 인권시책 자문·권고(민간전문가, 해당 국·관)
- ▶ 시민인권보호단 : 인권실태 모니터, 의견 제시 및 제안(NGO 등)

「인권보호경찰직무준칙」제정, 인권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환경 개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범죄수사규칙 등 수사관련 규정 정비

- ▶ ‘수사는 되도록 → 적극 임의수사를 활용’(범죄수사규칙 제99조)
- ▶ 조사시간은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제한하고 심야에 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범죄수사규칙 제167조)

유치인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한 유치환경 개선

※ 계구사용 한계 명확화, 유치실내 준수사항 개선, 화장실 등 시설 개선

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취약계층 피의자 보호활동 강화

- 무료수화 통역서비스 제공 및 법률구조 신청권 고지 확행
- 여성 및 외국인 전용유치실 운영 추진(시범운영 후 확대)

수사사항 공개기준 마련,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수사사건 언론공보에 관한 규칙」(가칭) 제정 및 공보책임자 지정·운영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환경 개선]

범죄현장에 지구대·형사·과학수사반이 함께 출동, 감식·피해조사를 한번에 마치는「

피해자 One-Stop 조사제」시행

임상심리사 채용, 강력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보호에 만전

※ 선진국 위기개입팀(Crisis Intervention Team) 운영사례 벤치마킹

「e-피해품 관리사이트」개설, 사이버상 범죄 피해회복 지원

고소인 대상 문자메시지 통지 활성화(자동통지 프로그램 개발)

[국민참여·교육·홍보를 통한 인권마인드 확산]

인권보호센터 및 지방청에「인권상담전화」개설, 신고 유도

- 시민인권보호단 활용, 법집행 대상 무작위 점검 및 평가

국가인권위와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권전문가 양성

※ 경찰교육기관에 인권과정 개설 / 전국 경찰관서 순회교육 실시(연1회)

인권사진전, 체험수기 공모, 포스터 제작 등 홍보활동 강화

「인권경찰의 날」운영(연1회), 인권선도 다짐 및 인권의식 함양

## II. 경찰인권의식 향상의 필요성

### 1. 사회적 요구와 경찰 현실 및 인식간의 차이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기 위해 경찰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이 되기 위한 개혁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찰에 대한 사회의 기대수준도 향상되어 여전히 경찰인권수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경찰의 현실 및 의식 간에는 간격이 존재한다. 일례로 국가 인권위원회가 출범한 2001년 11월부터 2005년까지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경찰을 대상으로 한 것이 교도소 등 구금시설 다음으로 많은 2,436건에 달했다.<sup>15)</sup>

<표 3> 경찰대상 인권침해 진정사례 사유별 현황 (2001.11~2005.03 총 2,436건)

진정사유	진정 접수 횟수	진정사유	진정 접수 횟수
강압적 불심검문	24	인격권 침해	291
불법/부당 감청	5	의료권 방해/제한	33
불법/부당 압수수색	36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27
불법/부당 감시/검열	31	과도한 신체검사	3
과잉진압	42	불법/부당 감금	44
피의자 권리 미고지	54	강압/부당 증거확보	42
가족 등에 대한 미 통지	6	소극적인 수사	156

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5년 국정감사 자료

진정 사유	진정 접수 횟수	진정 사유	진정 접수 횟수
불법/부당 임의동행	32	편파 수사	253
별건 체포/구속	15	수사 오류	73
체포요건 결여	86	공소권 남용	13
함정수사	9	내사/피의사실 유포	17
과도한 총기/장구 사용	73	전과기록 미삭제	5
접견/교통권 제한	17	알권리 침해	4
폭행	545	간접 피해	5
가혹행위	184	기타	311

위 표에 잘 나타나 있듯이, 경찰대상 인권침해 진정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체포나 진압과정 중의 폭행 시비를 제외하면 인격권 침해(291건), 편파수사 의혹(253) 등 사건 당사자나 시민이 불쾌하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등 ‘감정’이나 ‘기분’과 관련된 경찰관의 태도나 언행 문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는 범죄수사에 준하는 조사와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와 달리 조직 전체의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사회적 요구와의 균형 맞추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경찰업무의 특성상 약하고 힘없고 소외받은 이들을 많이 대하게 되고 이미 사회 다른 영역에서 차별과 무시를 경험한 이들에 대한 경찰관의 거칠거나 무심한 태도나 언행은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가 쉽다는 점에서 경찰인권의식 향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한 예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소년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인권상황 실태조사<sup>16)</sup>에서 경찰조사를 받은 소년사법 설문대상자 중 65%에 가까운 응답자가 경찰조사에 대해 불만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는 자백강요, 일방적인 조사, 의사표현 제약, 너무 무서운 언행 등이었다.

16) 국가인권위원회,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표 4> 소년사범의 경찰조사에 대한 만족도<sup>17)</sup>

만족도 수/비율	만 족	불 만	보 통	모 르 겠 다	무 응 답
총 405명	41명	263명	61명	29명	11명
%	10.12%	64.94%	15.06%	7.16%	2.72%

<표 5> 경찰조사에 대한 불만 사유<sup>18)</sup>(해당 사항 1개 이상 중복 선택)

사 유 수/비율	본인의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자백을 강요당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했다	가족을 못 만나게 했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 대우	너무 무섭게 대했다	기 타	무응답
총 405명	143명	149명	100명	41명	58명	21명	86명	56명	59명
%	35.31%	36.79%	24.69%	10.12%	14.32%	5.19%	21.23%	13.83%	14.57%

물론 같은 조사에서 소년사범들은 학교와 검찰, 소년원 등에 대해서도 경찰과 유사한 정도의 불만을 제기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의 태도와 언행은 사회일반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일반 시민과 달리 경찰관에 의해 이러한 일반적 인식이 행동과 말, 태도로 표현될 때에는 그 자체로 ‘차별’이 되며 ‘인권침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소년사범 이외에도 경찰은 그 업무상 주취자, 노숙자, 성매매 사범, 불법체류 외국인 등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양식에서 이탈해 있는 소수자들을 자주 대하게 되기 때문에 고도의 인권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는 한 부지불식간에 인권침해 시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더구나 경찰업무환경이 유발하는 스트레스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경찰하위문화로 인해 이러한 힘없고 소외된 소수자에게 다른 일반 시민과 다른 언행과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어떤 다른 직종이나 정부부서보다 높은 인권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7) 상계서

18) 상계서

## 2.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 준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 것이 이미 오래 전으로, 세계 각국의 제도와 기술, 문화와 사건 사고는 곧 다른 나라에 알려지고 서로 비교되고 있다. 경제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도 제품과 생산공정, 경영에 있어 국제적 표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국가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정부와 공공 서비스의 수준 역시 국제적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경찰의 인권침해는 그 국가와 사회를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덜 문명적이고 후진적인 사회로 인식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이며 이는 곧 관광과 투자의 감소 등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특정 집단이나 지역의 관습,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관행 등이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 행동에 투영되어 국제적 표준에 어긋나는 업무처리나 대민접촉이 이루어진다면 경찰관 개인, 혹은 그가 속한 경찰관서나 경찰조직 전체의 인식과는 달리 대상자의 피해의식 유발은 물론,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는 국제사회의 지적과 비난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국으로서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각종 인권관련 선언과 기준을 준수해야 할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음은 물론, 각종 국제 인권관련 규약에 가입해 이를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도 지고 있다. 특히 각 인권규약 가입국가 정부는 매 2-5년 마다 그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UN 및 주관 국제기구에서는 각 정부 제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자체조사를 통해 각 인권규약 준수정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III. 경찰업무와 관련된 국제 및 국내 인권 규범

경찰인권의식 향상의 지표 내지는 척도로 작용하는 것이 인권 관련 법과 규정, 기준 및 선언 등 가시적이고 구체화된 규범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권은 한 국가나 사회내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문제이며 전 세계적 차원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라크,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소말리아, 르완다, 동티모르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해당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경제제재와 무력적 개입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한 구제활동에 나서고 있다. 유엔 가입국인 우리나라가 준수해야할 국제 인권 선언 및 기준과 우리나라에서 가입한 중요 국제 인권 관련 규약들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 인권규범

#####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sup>19)</sup>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종결된 직후인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제3회 총회에서 이 세계에 다시 파시즘이 싹트지 않도록 하고 억압과 차별에 맞서기 위한 방과제로서 48개국의 찬성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야만적인 범죄가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채택된 이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진술한 최초의 기록이다. 또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는 내용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이 선언은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1948년 당시 58개 유엔 회원국은 상이한 경제발전단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체제와 종교, 문화적

19) <http://www.humanrights.go.kr>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각 지역에서 온 선언의 성안자들은 초안의 내용이 서로 다른 문화를 반영하면서 세계의 주요 법 체계, 종교적, 철학적 전통에 내재된 공통의 가치를 결합하는 것으로 만들기를 바랐다. 무엇보다도 이 선언은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위한 공동의 선언이 돼야 했다. 그 노력의 결실은 이 선언이 거의 보편적으로 수용됐다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오늘날 약 25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이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문서다. 국제 인권법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이 선언은 수많은 국제조약과 선언의 모델이 되고, 여러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수용되었다. 이 선언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포괄적인 조약체계를 구성하는 60개 이상의 국제인권규범을 탄생시켰다. 세계인권선언은 명확하고 간결한 30개 조항으로 다양한 인권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의 두 조항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제2조는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보편적 존엄성을 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 제21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시민·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노예, 고문, 자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도 포함하는 등 모든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바탕이 된다.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이 권리들의 시금석으로서, 모든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자유, 개인적인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머지 5개 조항에서는 직업, 정당한 보수, 여가와 관련된 경제적 권리, 건강, 복지와 교육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사회적 권리,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권리 등을 향유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구체화했다.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는 보편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모든 인권에 대해 더 큰 보호 틀을 제공한다. 제28조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

적,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제29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 속에서 자유롭고 완전하게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제30조는 어떤 외부적인 간섭에 의해 이 선언의 조항이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해석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것은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도, 이 선언에 근거하여,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직접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 중 특히 경찰업무와 직결되는 조항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 누구든지 생명과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떤 사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9조] 어느 누구도 불법적인 체포나 구금을 당해서는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 제11조의 1] 형법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변호를 위한 모든 수단이 허용된 공개재판에서 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누구든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 누구든지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동시에 어떤 모임에도 참여할 것을 강제 당하지 않아야 한다.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속칭 자유권규약, 혹은 B규약)<sup>20)</sup>

1966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그 10년 후인 1976년 3월 23일부터 발

20) 상계서

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는 2004년 6월 현재 152 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10일 자유권규약에 가입, 1990년 7월 10일부터 그 법적 효력이 개시되었는데, 자유권규약은 전문과 6부53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혹은 자결권), 2부는 당사국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남녀평등, 규약의 제한범위를 다루고 있다. 실제조항은 3부6조부터 27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조항으로 6조 생명권, 7조 고문금지, 8조 노예제도금지, 9조 신체의 자유, 12조 거주이전의 자유, 14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 17조 사생활(privacy)보호, 18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19조 표현의 자유, 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22조 결사의 자유 등이 있다. 또한 24조와 27조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빠진 아동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언급하고 있고, 41조는 국가간 청원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한 재산권(rights to own property), 국적권(rights to a nationality) 등은 각 국가 간의 견해 차이 등 여러 사유로 자유권규약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자유권규약은 정부가 비상사태시 예외적으로 권리를 유보하거나, 특정한 권리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조항(4조)을 두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essence)은 침해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 체계에서도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3단계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 어떠한 경우든 ‘법에 의해 명문화’ (“prescribed by law 원칙”)되어 있지 않으면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이란 자의적(arbitrary)이지 않고, 불합리(unreasonable)하지 않으며, 차별금지적(non-discriminatory)이어야 한다. 또한 법의 내용도 명확(clear)해야 하고, 누구든지 접근가능(accessible)해야 한다. 혹시라도 불법행위 또는 남용행위가 발생했다면 책임자 처벌, 피해자보상 및 사과 등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둘째, 그 제한이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한 경우라야 한다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원칙”)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이 민주사회 작동원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당사국이 진다. 여기서 민주적인 사회에 대해 유일한 모델에 대한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인권법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등의 개념을 충족시키는 것을 민주사회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legitimate aims 원칙)는 것이다. 정당한(정의로운) 목적이란 사회전반의 복지증진(공공복리) 등이다. 한편 이러한 제한조치

는 어디까지나 예외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고 좁게(narrowly) 해석해야만 한다. 각 가입 당사국은 매 5년 마다 유엔에 자유권규약 이행정도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속칭 사회권규약, 혹은 A규약)<sup>21)</sup>

1966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그 10년 후인 1976년 1월 3일 발효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2004년 6월 현재 149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10일에 가입하여 그해 7월 10일부터 법적 효력이 시작된 사회권규약은 전문과 5부 31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자유권규약과 동일한 내용의 사람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혹은 자결권), 2부는 당사국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남녀평등, 조약의 제한범위를 다루고 있다. 실체조항은 3부 6조부터 15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조항으로 6조 노동의 권리, 7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8조 노동조합 결성권, 9조 사회보장권, 10조 가정에 대한 보호, 11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12조 건강권, 13조 교육권, 14조 초등교육의 무상, 15조 문화생활에의 참여 권리 및 과학적 발전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권리 등이 있다. 1986년 ‘사회권규약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Limburg Principles)’은 당사국의 이행의무의 성격과 범위, 규약 당사국이 제출하는 보고서와 국제적 협력에 대한 고찰로 표준적인 규약 해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어 1990년 발표된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3’과 1997년 ‘사회권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Maastricht Guidelines)’에서 당사국의 사회권 침해를 설명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틀을 확립하였다. 즉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행위 및 결과의무(obligations of conduct and of result),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의무를 위반(violations through acts of omission), 즉각적인 사회권 실현 의무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핵심적인 국가의 의무(minimum core obligations) 등

21) 상계서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3년에 채택된 비엔나인권선언과 행동계획(VDPA, 제 2부 75항)은 사회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의 청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택의정서 채택을 촉구하였고, 현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회권위원회는 1989년부터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해 사회권규약 이행을 위한 국가의 조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가입 당사국은 매 5년 마다 유엔에 사회권규약 이행정도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속칭 고문방지협약)<sup>22)</sup>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87년 6월 26일 발효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는 2002년 2월 현재 128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9일 가입하여 같은 해 2월 8일 그 법적 효력이 개시된 고문방지협약은 전문과 3장 33조로 구성되어 있다. 고문방지협약에서 1조 1항은 고문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고문’(torture)이란 “공무원이나 공무원수행자 혹은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특정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 낼 목적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특정인에게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945년 뉴렘버그(Nuremberg)군사재판소 설립 헌장(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이후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에서 ‘고문’은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되어 왔으며, 고문행위가 어디서 일어나든 고문가해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왔다. 또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는 범죄발생 후

22) 상계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설사 범행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 (impunity)는 데서 출발한 소위 ‘소멸시효’이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국제인권법 이론을 관통하는 기본 원칙이며 이는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Against Humanity)에도 잘 명시되어 있다. 고문방지 협약 2조는 당사국 안에서 고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효과적인 입법, 행정, 사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조는 당사국이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 요원(law enforcement personnel)·의료인·법집행 공무원의 훈련과정에서 고문방지 교육과 정보가 포함될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11조를 비롯한 여러 조항에서 자세한 시행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에게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을 구금처리 하는 각종제도는 물론 심문 규칙·지침·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 하여, 고문이 자행될 여지가 없도록 하고,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진행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완전한 재활수단과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한편 21조는 국가 간 청원, 22조는 개인 청원을 규정하고 있다. 각 가입 당사국은 매 4년 마다 유엔에 고문방지협약 이행정도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s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s Against Women CEDAW, 속칭 여성차별철폐협약)<sup>23)</sup>

1979년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뒤 1981년 9월 3일 발효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는 2004년6월 현재 177개국에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11월 4일 가입, 1985년 1월26일부터 그 법적 효력이 시작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전문과 6부30조로 구성되어 있다. 1조에서 여성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것

23) 상계서

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구별, 배제 혹은 제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조는 당사국에게 남녀평등의 원칙을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명시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4조는 남녀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잠정적으로 시행되는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s)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조~7조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수단을 취하도록 서술하고 있으며, 10~14조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등 정치적 권리, 국적, 교육, 고용, 보건, 경제적 문제, 지역, 혼인과 가족관계 등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각 가입 당사국은 매 4년 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정도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속칭 인종차별철폐협약)<sup>24)</sup>

1965년 12월 21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69년 1월 4일 발효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2004년 6월 현재 169개국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 12월 5일 가입, 1979년 1월4일 그 법적 효력이 시작된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전문과 3부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 1조 1항에서의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계통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그 행사를 무효화 시키거나 침해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2조는 당사국에 의한 차별 뿐 아니라 개인이나 사설단체들에 의한 차별대우도 금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제껏 차별대우를 받아온 집단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s)가 일시적으로 시행되고 다른 형태의 인종차별을 조장하지 않는 한 합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3조는 인종차별정책(apartheid)을 규탄하고, 4조는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

24) 상계서

다. 5조~7조는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목록을 서술하고 있다. 사법기관에서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참정권, 거주 이전의 자유, 국적권,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 단독 및 공공재산 소유권, 상속권, 사상·양심·종교·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등 시민·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와 노동의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실업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참여권, 공중시설·장소에의 접근권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등이 그 내용이다. 한편 11조는 국가간 청원(inter-state communications)을, 14조는 개인 혹은 그룹 청원(communications from individuals or group)을 명시하고 있다. 각 가입 당사국은 매 2년 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정도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속칭 아동권리협약)<sup>25)</sup>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년 9월 2일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에는 2004년 6월 현재 192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가입, 1991년 12월 20일 그 법적 효력이 시작된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3부 54조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 1조에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 ▲아동의 의견 존중 ▲생존과 발달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는 생명권,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대중매체·정보에 대한 접근권,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건강권, 사회보장,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권, 휴식·여가를 누릴 권리, 난민·장애인·소수자·선주민 아동의 보호,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이 있다. 또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입법·행정·사법적으로 취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가용자

25) 상계서

원의 최대한도 까지 국제적 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 권리협약은 아동을 보는 시각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세웠다는 점, 협약 내 사회권과 자유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각 가입 당사국은 매 5년 마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정도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8) 기타 경찰업무에 직결되는 UN의 각종 인권관련 규칙과 지침 및 원칙들

- UN경찰행동강령(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 UN 경찰 행동강령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UN 지침(UN Guidelin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 탈법적, 자의적 및 약식 처형의 효과적 예방과 조사를 위한 UN원칙(UN Principles on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 Extra-Legal, Arbitrary and Summary Executions)
- 모든 사람을 강제적 행방불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UN선언(UN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 경찰관의 무력 및 총기사용에 관한 UN 기본수칙(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UN 표준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모든 종류의 구금이나 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UN규약집(UN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UN규칙(UN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 UN 대여성 폭력 근절 선언(UN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UN선언(UN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 2. 국내 인권규범

국내 인권규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주권과 정부구성,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입장이며 모든 법들의 기본이 되고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 및 규범력을 가진 ‘최고의 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업무와 직결되는 헌법 규정들은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하위 법과 명령, 규칙들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으며, 앞에서 살펴 본 국제인권규범들의 기본적 정신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중요한 인권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국내 인권규범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체포와 관련된 인권규범

헌법 제12조 5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피의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 2항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시 본인 또는 가족, 변호인 등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신문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신문은 판사의 주재 하에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피의자 및 변호인은 피의사실 및 구속사유 등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판사는 그와 같은 심문결과와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구속요건의 존부와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함과 동시에 적법절차의 원칙 및 법적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경찰관이 법관의 사전영장이 없이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의 두 가지이다.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아야 영장 없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동법 제214조).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 그리고 지방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은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동법 제200조의 3).

이와 같은 규정은 영장 없는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것을 요하는데 이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따라서 사후 구속영장의 발부는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동법 제200조의 4). 긴급체포시에도 영장에 의한 체포와 마찬가지로 체포사유를 피의자에게 알려야 하며,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법 제200조의 5).

## (2)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인권규범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사회적 소수자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의사의 불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통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1조에서는 “聾者 또는 啞者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들이 의사의 불통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인권규범

헌법은 제12조 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인정하고 있다.

### (4) 고문 및 가혹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인권규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시 제7항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고문의 금지와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고문을 법으로 금지하

고 있으며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는 등 본격적인 고문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

### (5) 피의 및 피해사실 공표 금지를 규정한 인권규정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출판에 의한 명예의 침해시에도 피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6)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인권규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는 제1조에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 옥내집회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옥외집회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집회,시위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동법 제12조의 2항). 주최자의 준수사항 (집시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한 집회·시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7) 도청 및 불법감청 금지 등 통신비밀 보호를 규정한 인권 규범

헌법은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통신비밀 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통신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하는 것으로(동법 제2조 제1호),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행형법 제18조·제19조 및 군행형법 제15조·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구속 또는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3호).

이 법에서는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범죄수사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다음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는 법원에서 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제5조).

또한 통신제한조치 등으로 취득한 내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하여(제11조), 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제12조) 악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8) 피의자·피구금인 신체수색과 관련한 인권규범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24조에서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1조 제1항에서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정밀 신체수색은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을 소지·은닉한 채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방법 예컨대 외부로부터의 관찰 또는 촉진에 의한 검사 등으로는 위 물품을 도저히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 이를 초과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인권침해가 된다.

## IV.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와 외국의 사례

경찰 인권의식은 동서,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세계 어디에서나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법을 집행하고 무력사용을 업무의 일환으로 삼고 있는 경찰의 특성상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에서는 인종차별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노숙자나 마약중독자, 성매매 종사자, 범법자 등 소위 ‘경찰대상 집단(police property)<sup>26)</sup>’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등의 문제가 주로 제기되는 반면,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회에서는 사상의 자유나 표현(언론)의 자유 억압, 불법 체포나 감금, 고문, 시위대에 대한 지나친 무력사용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등 그 대상이나 형태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등 여러 국제기구들도 경찰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여러 선언과 원칙과 지침들을 제정하고 선포하였으며 각 회원국들에게 경찰의 전 교육과정(신입, 기본, 보수, 전문)에 걸쳐 “UN 경찰행동강령” 등 경찰관에게 적용되는 국제적 인권지침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인권지침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해야 하고 국내법과 제도 및 업무관행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국가긴급사태 등 어떠한 응급상황도 이러한 인권지침의 위반을 합리화 내지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역시 세계 여러

26) 'police property'란 표현은 영국과 미국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그 직업이나 출신, 생활형태상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행하는 등의 이유로 경찰이 언제나 단속할 수 있고 체포할 수 있어 마치 '경찰에 소유한 재산'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일반인들에 대한 것과 다르며 경찰관들 사이에는 이들에게 어떤 폭언과 거친 행동을 해도 이를 문제 삼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잠재적 인식이 공유되어 있다. Robert Reiner, *The Politics of The Police* 3rd Edi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참조.

나라의 경찰대표 및 전문가들과 협의한 끝에, 세계인권선언 및 UN의 경찰 인권기준과 원칙들을 토대로 하여 채택한 「법집행 공무원을 위한 10가지 기본 인권기준(10 Basic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을 제정하는 등 경찰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행해지고 있으며 각 국에서도 자국 경찰 인권의식 향상은 물론 분쟁지역이나 개발도상국 등 경찰 인권침해 우려가 큰 지역의 경찰관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우리 경찰인권의식 향상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찾기 위해 중요사례들을 살펴보겠다.

## 1.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경찰 인권교육”<sup>27)</sup>

UN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약칭 OHCHR)에서는 각국 경찰 교관 및 교육기관, 국가 경찰공무원 및 UN 평화유지군의 경찰요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센터(The Center for Human Rights)’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경찰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 (1) 기본 수칙 및 교육 목표

인권고등판무관실의 경찰인권의식 향상 프로그램은 경찰업무의 인본주의적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필수 조건과 수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 모든 경찰관서는 지역사회 전체를 대표하며, 그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경찰관들의 인권의식을 효과적으로 향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정에 맞게

27)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A Manual of Human rights Training for the Police" -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5, UN, New York and Geneva.

인본주의적으로 잘 정비된 법체계가 제대로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경찰관 개개인은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일원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함을 본질적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행동은 전체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침을 명심하여야 한다.
- 모든 경찰조직은 교육과 훈련, 기강관리 절차를 통하여 국제인권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경찰관의 행동에 대한 공개된 외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경찰관의 인권기준은, 교육과 훈련 및 철저한 감독체제를 통해 현실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지 않는 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OHCHR 경찰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7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 ① 경찰업무 수행과 관련된 국제적 인권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② 국제적 인권기준을 실제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과 정책의 입안 및 적용을 진작한다
- ③ 경찰교육생들로 하여금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 및 일상 업무 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킨다.
- ④ 경찰관들 스스로 지니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에 대한 존중심을 향상시킨다.
- ⑤ 경찰조직 문화 중 준법의식과 국제적 인권기준 준수에 부합하는 의식과 관행을 진작한다.
- ⑥ 경찰조직 및 경찰관이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⑦ 경찰관을 위한 인권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교수요원을 확보한다.

## (2) 유엔 ‘인권교육 센터’의 인권교육 체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운영하는 인권교육 센터는 수년간의 경험과 자문, 연구 끝에 다음과 같은 8가지 기본 원칙을 골격으로 하는 인권교육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 ① 동료상호간 교육 방식 (Collegial presentations)

유엔 인권센터는 실무지향적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대학교수들이나 이론가들 위주로 교수진을 편성하지 않고 경찰관과 경찰교수요원들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교수진 구성으로 인해 인권센터에서는 교수-학생 식의 일방적 강의가 아닌 경찰관이 경찰관과 토론하는 ‘동료상호간 교육방식(collegial approach)’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찰관들의 독특한 직업 문화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동시에, 인권센터와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국(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 소속의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내내 함께하며 지도하기 때문에 교육내용 전반에 걸쳐 유엔의 인권기준이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반영된다.

### ② 교수요원 교육 방식 (Training for trainers)

인권센터에서는 교육대상자로 향후 각국 경찰에서 교수요원으로 종사할 사람들을 선발한다. 교육생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귀국한 후 그 교육내용을 자국 경찰관들에게 그대로 교육하고 전파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인권교육센터의 교육효과는 각국으로 번지며 몇 배로 증폭된다. 1992년 이래로 인권센터에서는 인권교육을 통해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교육방법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 ③ 교수기법 전수 (Pedagogical techniques)

인권센터에서 개발한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효과적인 성인교육기법들을 포함

하고 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기법들이 경찰관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적절하고 효과적이다: 팀 프로젝트, 강의-토론, 사례연구, 세미나식 토론, 원탁 분임토의, 브레인스토밍, 시뮬레이션 및 역할연기, 현장방문 및 영상자료.

#### ④ 교육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 (Audience specificity)

인권센터에서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인권원칙들을 단순히 반복하는 교육방식으로는 결코 교육대상자들의 실제 행동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인 경찰관들에게 맞고, 적합하며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센터의 교육은 유엔의 역사나 구성 같은 일반이론보다는 경찰관의 일상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⑤ 실무적 접근 (Practical Approach)

일선 경찰관들은 단순히 ‘어떤 법과 규칙들이 있는지’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과 규칙의 한계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를 더 알고 싶어 한다. 이 두 가지중 어느 한 가지를 무시한 교육이나 훈련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인권센터에서는 교육대상 경찰관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가 추천하고 문헌상으로 보고된 우수사례 중에서 이미 그 효과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한 정보들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교육내용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해도, 인권교육 과정 중에 경찰실무기술 훈련을 심도 있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교육 중에는 그러한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기술의 습득 자체는 인권교육 이후에 이루어질 후속 실무교육의 주 교육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⑥ 인권 감수성 향상 (Teaching to sensitize)

인권센터 교육은 경찰관들에게 인권기준과 실무기술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일상 업무 중에 별 의식 없이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고안된 훈련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찰관들 스스로의 태도나 행동에 스며있는 성이나 인종에 대한 편견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잘 고안된 훈련(예를 들면 역할연기)은 매우 유익할 수 있다.

### ⑦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유연성 (Flexibility of design and application)

각기 다른 교육대상자들에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수요원들로 하여금 경직된 단일한 접근이나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해서는 안 되고, 교수요원들이 교육과정과 기법들을 유연성 있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들은 대상 집단 내 다양한 그룹의 특정한 문화적 배경, 교육수준, 지역적 특성 및 경험과 현실적 상황 등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교수요원들은 정해진 교재를 ‘읽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맞는 내용과 교육기자재를 선별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자신만의 훈련 안을 구성해야 한다.

### ⑧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 (Evaluation tools)

인권센터의 교육과정들은 설문지를 포함한 사전 및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러한 평가는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지향한다:

- 가. 사전설문을 통해 교수요원이 교육대상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준비한다.
- 나. 사후설문 및 평가회의들을 통해 교육대상자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것을 측정해 본다.

다. 이러한 설문 및 평가들을 통해 교육과정을 끊임없이 개정하고 발전시킨다.

### (3) 유엔 ‘인권교육 센터’의 인권교육 기법

#### ① 교육 목표

교수요원의 목표는 교육생이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아래의 3가지 교육목표가 인권교육의 기초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경찰 훈련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요구 및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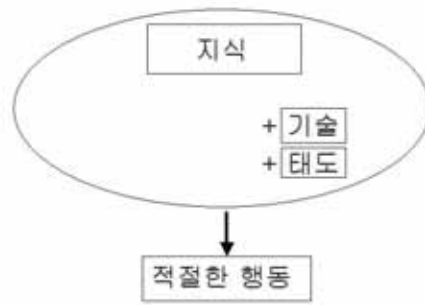
가. 정보 습득 및 지식 함양 : 인권의 의미, 인권기준의 내용 및 이들의 의미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

나. 기술의 습득 및 향상 : 경찰의 기능과 경찰관의 임무 수행이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거나 향상시킨다. 인권기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이 기준과 규칙들을 적절한 실제행동으로 옮기게 할 수 없다. 기술은 반복된 훈련과 적용을 통해 갈고 닦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의 습득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습득 과정은 인권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 : 경찰관이 인권의 신장과 보호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또 실제 임무수행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경찰관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나쁜 태도와 행동은 바꾸고, 좋은 태도와 행동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 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대상은 경찰관의 ‘가치관’이다. 가치관 역시 장시간에 걸쳐 변화되고 강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인권교육 이후의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경찰관에 대한 적절한 지휘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즉 효과적인 인권교육은 ‘지식’, ‘기술’ 및 ‘태도’의 향상을 통해 적절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1] 인권교육의 목표 체계도



## ② 참여식 교육기법

### 가. 발표 및 토론

교육생에게 경찰업무와 관련된 인권과 인권기준 및 이러한 인권 및 인권기준의 경찰 활동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한 짧은 발표를 하게한 후 발표내용에 대해 교육생들 간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요 쟁점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론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토론은 발표자 스스로 유도하도록 하는데, 발표자는 미리 토론을 촉발시킬 수 있는 질문들을 몇 개 준비하도록 한다. 발표자는 토론이 끝난 뒤 발표 및 토론내용을 모두 종합 정리한다. 발표자는 발표 이전에 미리 준비한 발표내용 관련 자료를 교육생들에게 배포한다.

### 나. 세니마식 토론

관련분야 전문가의 발표 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에 의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 이 때 각 패널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 중에는 반드시 인권문제 전문가와 경찰실무 및 교육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패널 중 한 사람이 좌장 역할을 하여 교육생들로부터 가능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패널 및 청중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좌장은 세미나 말미에 발표 및 토론 전체를 종합정리한다.

#### 다. 프로젝트 팀

교육생들은 각 5-6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나뉘어 약 5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토론할 주제, 해결해야할 문제 혹은 제출해야할 과제를 부여받는다. 필요한 경우 각 팀당 한 명씩의 교수요원이 배정된다. 팀 프로젝트 시간이 종료하면 모두 모인 상태에서 각 팀 대표가 팀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한다. 각 발표 후에는 교육생 전체가 해당 주제에 대해 토론하거나 해당 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 라. 시나리오 훈련

프로젝트 팀에게 2번째로 부여되는 과제는 실제상황을 연상시키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 찾기다. 이 때 시나리오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며,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인권과 관련한 2-3가지 주요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시나리오는 그 전체가 한꺼번에 팀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전개되는 단계별로 조금씩 주어지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각 참가 경찰관들은 자신의 '경찰 기술'을 사용하는 한편, 인권기준을 준수하여 주어지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교육대상자가 고위 경찰간부일 경우에는 지휘 및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 마. 문제해결/브레인스토밍

이론적인 문제와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매우 집중력을 요하는 교육기법이다. 교육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분석한 후 해답을 개발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게 되면 교육생에게 참여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최대한의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문제가 주어진 후 이에 대한 모든 반응은 커다란 칠판이나 종이에 기록된다. 이 과정에서 어떤 반응이라도 놓치지 않고 기록되어야 하며 어떤 반응에 대해서도 결코 판단을 내리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진행자가 칠판(혹은 종이)에 적힌 응답내용들을 범주화하고 분석해서 유사한 것끼리는 한데 묶고, 응용내지 변경이 필요한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지운다. 최종적으로 각 그룹은 토론을 거쳐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한 후에 최종 대안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각 제시안들에 대한 토론을 거치면서 학습 및 감수성 향상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 바. 시뮬레이션/역할연기

교육생들은 실제상황과 똑같은 설정 하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해내야 한다. 경찰관들은 인권과 법집행의 갈등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역할연기를 통해 경찰기술을 연마하거나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미리 실제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 각 교육생들에게 배포되고 교육생들은 각자 경찰관, 피해자, 목격자, 판사 등 해당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수업 중에는 어느 누구도, 단 한순간도, 결코 주어진 역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여야 한다. 이 교육방법은 특히 경찰관들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관점이나 느끼는 감정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특정 주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 사. 현장 방문

경찰관들에게 사전에 방문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경찰서, 교도소(구치소), 수용소 등을 방문한다. 방문 중 교육생들은 주의를 집중하여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후 돌아와 토론한다.

### 아. 실습

교육생들은 교수요원의 지도 하에, 특정한 경찰 기술을 적용하거나 발휘하여 과제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실무 경찰관일 경우 특정 경찰업무에 대한 인권지침을 작성하거나, 교수요원의 경우 인권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실제 스스로 작성한 강의안에 따라 인권강의를 해본다.

### 자. 원탁회의

주제가 주어지고, 각 참가자들은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어 놓으며 서로 토론한다. 토론을 주재하고 이끌어내는 진행자는 해당주제와 토론기법에 능숙한 사람이어야 하며, 강한 카리스마와 역동적인 태도로 토론을 활발히 이끌어내야 한다. 진행자는 고의적으로 참가자간 논쟁을 부추기고, 각 참가자들을 자극해서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차. 시청각 교재

성인교육에 있어서는 칠판, 프로젝터, 포스터, 장식물, 차트, 사진, 비디오나 영화 등 시청각자료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 ③ 교육 장소 및 운영

가능하다면, 다음에 열거하는 조건들이 충족되는 곳을 인권교육 장소로 택해야 한다 :

### -. 교육시설

가. 교육대상자들의 일상적인 업무환경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곳

나. 충분한 공간의 교육장소를 갖춘 곳

다. 충분한 수의 소규모 세미나실이 갖추어져 있어서 각 분임이나 프로젝트

팀이 방해받지 않고 공동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곳

라. 앉는 자리가 편안하고 충분한 이동성이 확보되어 다양한 교육기법에 따라 의자나 책상, 탁자 등을 자유로이 옮길 수 있는 곳

-. 교육생의 편의 (교육 기간 중 교육생들이 느끼는 편안함은 교육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 방실의 온도 및 환기시설이 잘 설비되어 있고 조절 가능할 것

나. 교육과정은 결코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화장실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 있을 것

라. 일과운영은 반드시 오전 중에 최소 15분의 커피타임/휴식, 최소 1시간의 점심시간, 오후 중 최소 15분의 커피타임/휴식을 포함할 것

마. 수업과 휴식시간 사이에, 최소 하루 2회의 스트레칭 시간(약 2-3분)을 허용할 것.

바. 가능한 교육실 안에 커피, 물 기타 음료수들을 구비해 둘 것

사. 점심시간은 교육생들이 통상적으로 익숙한 시간에 편성할 것.

#### (4) 인권교육 과정 편성 예

##### ① 교수요원 교육 : 교육기간 - 7일

1일차

07:30-08:30 등록 및 교육자료 배포

08:30-09:00 경찰 대표 인사말

인권교육 센터 대표 인사말

09:00-09:30 교수요원 및 교육생 소개

09:30-09:45 커피 타임 (휴식)

09:45-10:00 교육과정 소개

10:00-11:00 “경찰활동에 있어서의 인권”과 관련된 법, 체계 및 기준

발표 40분, 질의응답 및 토론 20분

11:00-13:00 민주사회에서의 경찰활동 : 경찰윤리와 법치주의

발표 40분, 팀 프로젝트 40분, 프로젝트 팀별 발표 40분

13:00-14:00 점심 시간

14:00-15:30 경찰, 인권 및 차별금지

발표 20분, 그룹별 토론 70분(교수요원 주재)

== 1일차 교육 종료 ==

2일차

08:30-11:00 인권과 경찰 수사

발표 40분, 질의응답 20분, 팀 프로젝트 40분, 팀별 발표 50분

11:00-11:15 커피타임/휴식

11:15-13:00 난민의 권리 보호

발표 20분, 팀 프로젝트 40분, 프로젝트 팀별 발표 45분

13:00-14:00 점심식사

14:00-15:30 경찰과 소년사법

발표 30분, 그룹 토의(청소년범죄 예방) 60분

== 2일차 교육 종료 ==

## 3일차

08:30-11:00 체포 및 구금과정에서의 인권 발표 40분,

질의응답 20분, 팀 프로젝트 40분, 팀별 발표 50분

11:00-11:15 커피타임/휴식

11:15-13:00 지역사회 경찰활동

발표 30분, 브레인스토밍 75분

13:00-14:00 점심식사

14:00-15:30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의 여성의 권리

발표 30분, 그룹 토의(여성의 권리 보호) 60분

== 3일차 교육 종료 ==

## 4일차

08:30-11:00 물리력과 무기의 사용

발표 40분, 질의응답 20분, 팀 프로젝트 40분, 팀별 발표 50분

11:00-11:15 커피타임/휴식

11:15-13:00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발표 20분, 팀 프로젝트 40분, 팀별 발표 45분

13:00-14:00 점심식사

14:00-15:30 피해자 보호 및 위무

발표 30분, 그룹 토의(피해자를 위한 정의) 60분

== 4일차 교육 종료 ==

5일차

08:30-11:00 소요사태와 무력충돌

발표 40분, 질의응답 20분, 팀 프로젝트 40분, 팀별 발표 50분

11:00-11:15 커피타임/휴식

11:15-13:00 경찰훈련과정에 인권 반영하기

발표 30분, 팀 프로젝트 45분, 팀별 발표 30분

13:00-14:00 점심식사

14:00-15:30 인권교육 강의안 준비

설명 15분, 그룹 작업(교수요원 지도) 90분, 종합(전체) 45분

== 5일차 교육 종료 ==

6일차

08:30-11:00 인권 강의 실습

설명 15분, 교육생들 강의 실습 135분

11:00-11:15 커피타임/휴식

11:15-13:00 강의 실습 계속 95분

13:00-14:00 점심식사

14:00-15:00 최종 시험

15:00-15:15 커피타임/휴식

15:15-16:00 시험 결과 강평

== 6일차 교육 종료 ==

## 7일차

09:00-10:00 교육 평가

설명 5분, 교육평가 설문 작성 30분, 그룹 토의 25분

10:00-10:15 커피타임/휴식

10:15-11:15 수료식

인권교육 센터 대표 연설, 경찰대표 연설, 수료증 수여

== 교육 종료 ==

## ② 경찰 고위간부 교육 : 교육기간 - 7일

## 1일차

07:30-08:30 등록 및 교육자료 배포

08:30-0900 경찰 대표 인사말

인권교육 센터 대표 인사말

09:00-09:30 교수요원 및 교육생 소개

09:30-09:45 커피 타임 (휴식)

09:45-10:00 교육과정 소개

10:00-11:00 “경찰활동에 있어서의 인권”과 관련된 법, 체계 및 기준

발표 40분, 질의응답 및 토론 20분

11:00-13:00 민주사회에서의 경찰활동 : 경찰윤리와 법치주의

발표 40분, 팀 프로젝트 40분, 프로젝트 팀별 발표 40분

13:00-14:00 점심 시간

14:00-15:30 경찰, 인권 및 차별금지

발표 20분, 그룹별 토론 70분(교수요원 주재)

== 1일차 교육 종료 ==

## 2일차

08:30-11:00 인권과 경찰 수사

발표 40분, 질의응답 20분, 팀 프로젝트 40분, 팀별 발표 50분

11:00-11:15 커피타임/휴식

11:15-13:00 난민의 권리 보호

발표 20분, 팀 프로젝트 40분, 프로젝트 팀별 발표 45분

13:00-14:00 점심식사

14:00-15:30 경찰과 소년사법

발표 30분, 그룹 토의(청소년범죄 예방) 60분

== 2일차 교육 종료 ==

## 3일차

08:30-11:00 체포 및 구금과정에서의 인권

발표 40분, 질의응답 20분, 팀 프로젝트 40분, 팀별 발표 50분

11:00-11:15 커피타임/휴식

11:15-13:00 지역사회 경찰활동

발표 30분, 브레인스토밍 75분

13:00-14:00 점심식사

14:00-15:30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의 여성의 권리

발표 30분, 그룹 토의(여성의 권리 보호) 60분

== 3일차 교육 종료 ==

4일차

08:30-11:00 물리력과 무기의 사용

발표 40분, 질의응답 20분, 팀 프로젝트 40분, 팀별 발표 50분

11:00-11:15 커피타임/휴식

11:15-13:00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발표 20분, 팀 프로젝트 40분, 팀별 발표 45분

13:00-14:00 점심식사

14:00-15:30 피해자 보호 및 위무

발표 30분, 그룹 토의(피해자를 위한 정의) 60분

== 4일차 교육 종료 ==

5일차

08:30-11:00 소요사태와 무력충돌

발표 40분, 질의응답 20분, 팀 프로젝트 40분, 팀별 발표 50분

11:00-11:15 커피타임/휴식

11:15-13:00 지휘와 관리에 있어 특별히 유의할 사항

발표 30분, 팀 프로젝트 45분, 팀별 발표 30분

13:00-14:00 점심식사

14:00-15:30 경찰 인권지침 안 준비

설명 15분, 그룹 작업(교수요원 지도) 90분, 종합(전체) 45분

== 5일차 교육 종료 ==

#### 6일차

08:30-11:00 인권지침안 평가 및 적용 회의

설명 15분, 회의 135분

11:00-11:15 커피타임/휴식

11:15-13:00 인권지침 완성 및 적용

토론 90분, 인권지침 적용 및 응용 15분

13:00-14:00 점심식사

14:00-15:00 최종 토론

15:00-15:15 커피타임/휴식

15:15-16:00 종합 정리

== 6일차 교육 종료 ==

#### 7일차

09:00-10:00 교육 평가

설명 5분, 교육평가 설문 작성 30분, 그룹 토의 25분

10:00-10:15 커피타임/휴식

10:15-11:15 수료식

인권교육 센터 대표 연설, 경찰대표 연설, 수료증 수여

== 교육 종료 ==

### (5) 교육 전 설문 조사 내용

[이 교육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귀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학력을 말씀해 주세요 (전공, 자격증 혹은 학위 명시)
2. 근무경력을 말씀해 주세요
3. 과거 인권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자세히 적어주세요
4. 경찰관으로써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5. 귀하는, 본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권 관련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경찰업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인권기준이 있으면 대해 아는 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 인권기준을 담고 있는 국제조약이나 규정의 명칭을 아는 대로 써 주세요.
8. 체포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아는 대로 서 주세요.
9. 고문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나요?

10.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어떤 때인가요?

11. 어떤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12. 청소년 범죄자들은 성인범죄자들과 달리 취급되어야 하나요? 가급적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3. 가정내 폭력이 경찰활동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요?

14. 기타 교수요원들이 관심 가져야 할 사항이나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 (6) 교육 후 교육평가 설문 조사 내용

[귀하가 방금 수료한 본 교육과정에 대한 귀하의 느낌과 평가를 확인하고, 본교육과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향상을 바라는 귀하의 관심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아래 설문에 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이번 교육과정에서 국제적 인권기준에 대한 발표에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a. 매우 만족                      b. 만족                      c. 불만족

의견 :

2. 국제적 인권기준을 귀하의 업무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과 수단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 a. 매우 만족                      b. 만족                      c. 불만족

의견 :

3. 본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 a. 매우 만족                      b. 만족                      c. 불만족

의견 :

4. 전문가들의 발표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 a. 매우 만족                      b. 만족                      c. 불만족

의견 :

5. 본 교육과정 중 시행된 팀 프로젝트 등 실습교육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 a. 매우 만족                      b. 만족                      c. 불만족

의견 :

6. 본 교육과정 중 실시된 전체토론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 a. 매우 만족                      b. 만족                      c. 불만족

의견 :

7. 본 교육과정 중 제공된 교육자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 a. 매우 만족                      b. 만족                      c. 불만족

의견 :

8. 귀하는 본 교육과정중,

(a) 인권기준을 귀하의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셨나요?

(b) 습득한 정보를 다른 동료들에게 전파하였나요?

의견 :

9. 귀하의 생각에, 경찰관 인권교육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10. 추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2. 국제사면위원회 제정 「법집행 공무원을 위한 10가지 기본 인권기준(10 Basic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sup>28)</sup>

대표적인 국제적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는 ‘유엔 경찰관 행동강령’ 및 기타 경찰관에게 적용되는 국제적 인권기준들을 경찰 기본교육 및 모든 경찰 보수 및 전문교육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경찰인권지침을 제정하였다. 아래 「법집행 공무원을 위한 10가지 기본 인권기준(10 Basic Human Rights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세계 여러 나라의 경찰대표 및 전문가들과 협의한 끝에, 세계인권선언 및 UN의 경찰 인권기준과 원칙들을 토대로 하여 채택한 것이다.

### [인권지침 1]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히 폭력과 협박의 위협에 처한 사람은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경찰관은 특히 어린이, 노인, 여성, 피난민, 가출인 및 사회적 소수 등 폭력과 협박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 □ 설명

[인권지침1]의 실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관들이 경찰이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특별한 의무와 고도의 책임감을 받아들여야한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업무와 일처리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 기본적인 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나큰 자기희생이 필요하며 일반인과

28)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POL300041998?open&of=eng-326>

는 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권력자와 소수 집권세력을 위해 봉사하고 전국이 일률적으로 중앙의 통제와 지시를 수행하는 군사정권 하에서의 경찰모습이 아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지역 주민들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해 주는 ‘지역주민의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 □ 실천방안

경찰은 [인권지침1]의 실천을 위해 그 본질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며 다음사항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안전해야 한다는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어느 누구도 불법적으로 감금 혹은 추방을 당해서는 안 된다.
- 어느 누구도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스러운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 모든 사람은 어떤 사유로도 차별 받음 없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누구든지 이동의 자유를 가진다.
- 누구든지 평화로운 집회를 할 자유를 가진다.
-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 [인권지침 2]

경찰관은 모든 범죄 피해자를 ‘연민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특별히 그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 □ 설 명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적 및 육체적 상처, 감정적 괴로움, 경제적 손해 혹은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포함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다. 그러나 때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부주의나 편견으로 인해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때로는 범인이나 그 주변인들이 피해자에게 보복 혹은 소 취하를 종용하기 위해 위협나 협박 등을 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이 무심히 언론에 흘린 피해자의 신분과 주소 등이 매스컴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경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이 커다란 충격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입을 명심하여 언행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 실천방안

[인권지침2]의 실천을 위해 경찰관들은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피해자를 협박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 및 복지행정 서비스와 기타 관계되는 지원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 폭력피해를 당한 여성에게는 지체 없이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 폭력피해를 당한 여성이 조사과정 중 추가적인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사 및 수사기법을 개선해야 한다.
- 피해의 특성이나 피해자의 성별, 인종, 성적 취향, 나이, 종교, 국적, 언어, 정치적 이념이나 견해, 장애,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해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인권지침 3]

경찰관은 오직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더라도 상황에 따른 필요최소한 정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설명

[인권지침3]의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관들이 임무 수행에 있어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비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요 관행이 되어야 한다. 경찰관은 다른 모든 수단들이 효력이 없거나 필요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비로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관 교육과 훈련에 있어 설득, 중재 등 능란한 대화기법 습득을 무엇보다 중시하여야 하며 침착성과 판단력을 고취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 경찰관이 불필요한 무력사용을 한 때에는 그 경찰관이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조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 □ 실천방안

합법적인 무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모든 경우에 있어 경찰관은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물리력 사용의 정도와 방법의 선택에 있어, 범법행위의 심각성과 달성하고자 하는 적법한 목표에 비례하도록, 자제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모든 부상 혹은 충격을 당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모든 도움과 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모든 부상 혹은 충격을 당한 사람의 친지에게 최대한 빨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경찰관의 무력사용으로 인해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상관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인권지침 4]

경찰은 불법적이지만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통제할 때에는 가급적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폭력적인 집회를 해산할 때에도 오직 필요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설명

평화적인 집회에는 누구든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오직 ‘공공의 질서와 안전 보호’라는 민주사회에서의 필요에 의해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매우 제한된 제재만 적용될 뿐이다. 경찰은 결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집회 참가자 혹은 그 밖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간혹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자극하고 장기간 도로나 사업장 점거 등으로 인해 강제해산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경찰과 시위대간의 무력충돌로 다수의 부상 등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임무를 띤 공무원으로서 감정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 불가피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제적 인권기준과 헌법 및 별률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되며 이로 인해 처벌을 받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 실천방안

경찰은 [인권지침4]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 불법적이지만 폭력적이지는 않은 집회를 통제함에 있어 경찰관은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 물리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오직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제한하여야 하며 위 [인권지침 3]에서 제시한 실천방안들을 준수해야 한다.

- 경찰은 비폭력적인 집회를 통제함에 있어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경찰은 폭력적인 집회를 해산함에 있어, 다른 수단들이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한해 물리력을 사용해야 한다. 물리력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인권지침3]의 실천방안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경찰은 폭력적인 집회를 해산함에 있어 오직 다른 수단들이 실효성이 없을 때에 한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예방하거나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 혹은 도주하는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와 범위 내에서, 총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인권지침3]과 [인권지침5]의 실천방안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권지침 5]

경찰관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 등 살상용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설명

총기의 사용은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간혹 ‘도주하는 절도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이는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엄연한 반인권적 불법행위이다. 주력이 부족하여 도주하는 절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없다면 지원을 요청하고 수배를 하는 등 다른 수단과 방법들이 있다. 다만 경찰관 자신과 타인의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있는 등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 있고 확실하게 무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경찰교육과 훈련과정에서는 무기사용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그 사용방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 □ 실천방안 1 (총기사용의 목적)

[인권지침5]를 실천하기 위해 경찰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리고 오직 다른 수단들은 효과가 없는 때에 한해 총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이나 타인 보호
-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특히 중한 범죄의 범행 방지
-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경찰관에게 저항하려 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그 범인의 체포나 도주방지

### □ 실천방안 2 (총기사용의 방법)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총기의 사용은 오직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경찰관은 이러한 상황임을 분명히 확인한 후에, 총기를 사용한다는 분명한 경고를 하고 상대방이 그 경고를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 이후에 총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경고와 지체행위가 경찰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거나 상황의 특성상 명백히 부적절하거나 무의미할 경우에는 경고와 지체 없이 바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 □ 실천방안 3 (총기사용 관련 법규)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법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경찰관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휴대가 허용되는 총기와 실탄의 종류를 명기하여야 한다.
- 총기의 사용은 반드시 적절한 상황 하에서만, 불필요한 피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 불필요한 부상이나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총기나 실탄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 모든 경찰관은 자신에게 지급된 총기와 실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총기를 지급할 때, 적절한 경고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총기를 사용할 때마다 이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인권지침 6]

경찰관은 법적인 근거 없이 어느 누구도 체포해서는 안 되며, 체포를 할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설명

체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사유와 체포하는 경찰관의 신분 및 권한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야 한다. 경찰관은 법률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체포사유와 피의자의 권리를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체포 이후에도 조사나 보호유치 과정에 있어 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침해 혐의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절차상의 불법으로 인한 조사결과의 증거능력 상실의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 교육과 훈련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체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적법절차의 준수가 관행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 □ 실천방안

[인권지침6]의 실천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체포와 유치(구금)는 철저히 관련 법규정에 따라,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경찰관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 체포를 행하는 경찰관은 반드시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체포를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체포 즉시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 체포시간, 체포사유, 유치(구금)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체포를 행한 경찰관의 신원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 기록은 반드시 유치(구금)된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체포를 행하는 경찰관은 반드시 그 대상자와 주변에서 그 상황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 체포를 행하는 경찰관은 이름표, 신분증, 뱃지 등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징표를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경찰차량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항상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 누구든지 구속되기 전에는 반드시 판사 혹은 법에 의해 사법권을 부여받은 사법관에게 진술할 기회(구속적부심)를 부여받아야 하며, 적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재판을 받거나 석방되어야 한다. 구속수사가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모든 구속상태에 있는 피의자는 반드시 공인된 구속장소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구속장소는 반드시 그 구속장소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 아닌, 인권위원회 등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임명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경찰은 난민과 망명 요청자를 구금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 기준에 의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구금이 필요하고 적법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어떤 망명 신청자도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구금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한 기

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금된 모든 망명신청자는 사법부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조사와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난민과 망명신청자의 구금사실은 반드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을 포함한 난민지원기구에 통보되어야 한다.

### [인권지침 7]

경찰은 체포 즉시 체포된 사람이 가족 및 변호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 □ 설명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이 고문 혹은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실종 혹은 살해될 위험이 가장 큰 것은 체포직후 수 시간 내지 수일 이내이다.

#### □ 실천 방안

[인권지침7]의 실천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 즉시 자신이 받는 처우에 대한 불만제기를 포함한 권리들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 경찰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의자에게는 무료 통역을 통해 체포된 이후의 법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외국인 피의자에게는 즉시 관계국의 영사 내지 외교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 모든 체포된 난민과 망명신청자에게는, 체포의 사유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의 유엔난

민고등판무관실 대표자 혹은 난민지원기관과의 접촉이 허용되어야 한다. 체포된 자가 자신을 난민 혹은 망명신청자라고 밝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본국으로의 송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 경찰관은 반드시 이들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나 기타 난민지원기구들과 접촉하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 경찰은 반드시 모든 체포된 자에게 가족이나 친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들이 경제적 혹은 기술적 이유로 인해 친지에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관이 대신 연락해 주어야 한다.
- 경찰은 체포, 구금장소, 이송 내지 석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즉시 대상자의 친지나 관계인들이 알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경찰은 피구금자의 친지들이 이러한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어떠한 방해나 지장도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이 어디에서 이러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경찰은 피의자를 구금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친지 혹은 다른 관계인이 피구금자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이후로도 경찰은 친지 및 기타 관계인이 피구금자와 연락을 취하고 추가 방문을 통해 피구금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경찰은 체포직후 모든 피구금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피구금자가 자신의 변호를 준비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과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시나 엿들음 없이,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구금이 이루어진 직후, 피구금자의 건강상태와 고문이나 강간 및 성적 학대 등 가혹 행위를 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의 적절한 검진이 행해져야 한다. 그 이후 필요할 때마다 의료 검진과 치료가 행해져야 한다. 모든 피구금자와 그 변호인에게 제3의 의사로부터 검진과 의학적 소견을 제공받게 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모든 피구금자는 결코, 비록 본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의학적 혹은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여성인 피구금자는 여성의사로부터 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출산 전후에 받아야 하는 모든 진료와 조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임신한 여성에 대한 장구의 사용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며, 결코 산모나 태아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안 된다. 출산 중에는 결코 결박당해서는 안 된다.

### [인권지침 8]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경찰관은 결코, 어떤 경우에라도, 고문 혹은 가혹행위를 행하거나 조장하거나 묵과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지시 명령도 거부하여야 한다.

#### □ 설 명

경찰의 체포 및 보호유치, 구속 등 구금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특성상 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찰관은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피구금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진다. 구금장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기록의 유지가 필수적인데, 필요할 경우 열람할 수 있는 공식기록이 유지된다면 피구금자를 고문 등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 □ 실천방안

[인권지침8]의 실천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 어떤 형태의 구금상태에서도, 어느 누구도, 결코 고문 혹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경찰관에게는 이러한 행위를 하라는 지시 명령을 거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경찰관은 결코 모든 형태의 고문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직접 행하거나, 부추기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사나 상급기관의 지시 혹은 전시상태, 정치적 불안 기타 위급 상황 등을 구실로 삼아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 경찰은 구금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고문행위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개념은 심지어 일시적으로 눈이나 귀를 가리는 등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각작용을 제한하거나 현재의 위치나 시간의 흐름 등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등 모든 종류의 육체적 및 정신적 가혹행위를 포함한다.
- 경찰관은 피구금자에게 자백 혹은 자신이나 타인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조사를 받고 있는 피구금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력적인 위협이나 방법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성인 피구금자를 조사할 때에는 반드시 여성 경찰관이나 간수가 동석해야 하며, 여성 피구금자를 대상으로 신체수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여성 경찰관 또는 간수만 참가해야 한다.
- 어린이에 대한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시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 어린이를 구금한 때에는 즉시 부모나 친지에게 연락하거나 변호인이나 의사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며 그 위치를 친권자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경찰관은 청소년인 피구금자를 성인피구금자와 격리하여 다른 장소에 수용해야 하며, 감독관이나 다른 피구금자로부터 고문이나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형법상 범죄행위가 아닌 사유로 구금된 난민이나 망명신청자는 결코 일반 형사사범과 같은 장소에 구금되어서는 안 되며 이들에 대한 처우와 수용시설은 인간적이고 난민의 지위에 부합하여야 한다.
- 피구금자는 기결수와는 격리 수용되어야 하며, 가급적이면 거주지 혹은 주 활동장소와 가까운 곳에 유치되어야 한다.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가급적이면 자신의 옷을 입

도록 하고 독방에서 자도록 하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형사절차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책이나 신문 혹은 필기구와 또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리를 받거나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경찰서를 포함한 모든 구금시설에는 반드시 유치인기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대장은 반드시 쪽 번호가 인쇄된 책자 형태로 제본되어 그 내용을 훼손하거나 인멸하면 반드시 흔적이 남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대장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 각 피구금자의 성명과 신분
- 체포 및 구금의 사유
- 피구금자를 체포하거나 이송해 온 경찰관의 이름과 신분
- 체포 혹은 이송된 일시
- 구금 중 행한 신문(조사)의 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과 조사관의 이름
- 최초로 법원에 출두한 시간
- 구금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 석방 혹은 다른 구금장소로 이송된 일시 및 정황

- 경찰은 경찰서 및 유치장 등 구금시설 점검을 위한 국가 및 지방 변호사회나 의사협회, 국회 및 지방의회와 관련국제기구 대표의 방문을 제약 없이 허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들의 사전예고 없는 방문이 허용되어야 한다.
- 경찰은 이들이 구금시설의 모든 부분을 점검하고 모든 피구금자와 감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희망할 경우 재차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이들이 피구금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권고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인권지침 9]

경찰관은 결코 ‘탈법적 처형’을 행하거나 사람을 ‘행방불명’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시하거나 은폐해서도 안 된다. 또한 이에 대한 어떠한 지시 명령도 거부하여야 한다.

## □ 설명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혹은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탈법적 처형’이란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관계자에 의한 지시 혹은 묵인 하에 행해지는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해행위를 일컫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행동
- 살인을 금지한 국내법 혹은 자의적인 살상행위를 금지한 국제기준 위반 아울러, 범죄행위인 ‘탈법적 처형’은 다음과 같은 정당화되는 살상행위와 구별된다:
  - 자기방어를 위해 행하는 정당방위로서의 살상행위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 결과로 야기된 죽음
  - 국제인권법이 금지하지 않는 무장충돌 상황에서 발생한 죽음

테러나 무장강도 등 무장충돌 상황에서도, 경찰이나 정부소속 전투원은 결코 자의적 혹은 약식재판에 의한 처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제네바협약 제3조에 어긋나는 범죄행위이다.

‘행방불명’되게 한다는 것은, 경찰 등 정부요원이 구금한 후 그 위치나 생사 혹은 건강 상태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다. 어떠한 지시나 명령도 ‘탈법적인 처형’이나 ‘행방불명’야기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구실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지시나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할 의무를 진다.

모든 경찰관과 법집행 공무원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시에 대해 불복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는 불법이

기 때문에, 경찰관은 이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지시에 대한 불복은 ‘의무’이며, 지시 명령에 대해 복종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보다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 불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에게는 불복할 ‘권리’가 부여된다. ‘탈법적인 처형’이나 ‘행방불명’ 야기행위에 참가하라는 명령에 불복할 의무와 권리는 “행방불명에 대한 UN선언(제6조)” 및 “탈법적, 자의적 및 약식재판에 의한 처형에 관한 UN 원칙(제3원칙)”에 규정되어 있다. “경찰관의 무력 및 총기사용에 관한 UN 기본원칙”은, 동 원칙과 “UN제정 경찰 행동강령”에 규정한 사유로 무력이나 총기사용에 관한 지시 명령에 불복하거나 다른 경찰관의 무력 혹은 총기사용행위를 고발한 경찰관에 대해 형사 및 징계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천명함으로써 “불복할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 □ 실천방안

[인권지침9]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무력 혹은 총기의 사용에 있어 위에 제시한 [인권지침3], [인권지침4] 및 [인권지침5]의 모든 규정과 실천방안들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 [인권지침 10]

경찰관은 위 기본인권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반드시 상급자나 검찰, 혹은 인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설명

본 인권지침 규정위반을 포함한 경찰관 및 기타 법집행 종사자의 모든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그 위반자와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다”.

#### □ 실천방안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는 다음 질문들에 대한 규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인권침해 행위 혹은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했는가? 만약 발생했다면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는가?
- 경찰관 등 공무원이 범죄나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행동은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 졌는가? 혹은 다른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는가?
- 경찰이나 검찰은 이를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는가? 증거가 충분히 발견된다면 기소할 예정인가?

### 3. 미국의 경찰 인권교육

미국에서 ‘경찰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교육이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로, 도시지역 폭동 당시 일부 경찰관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출범된 다양한 조사위원회들과 그 결과 제기된 전문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경찰교육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29)</sup> 그 이래로, PERF(경찰 고위 연구포럼)의 후원으로 미시간주립대학교의 데이비드 카터가 주도한 연구 등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경찰교육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왔다.<sup>30)</sup> 특히 POST 커

29)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 Challenge of Crime in a Free Society," in *Classics of Criminology*, ed. Joseph E. Jacoby, Oak Park, Ill.: Moore Publishing Company, Inc., 1979:328.

30) Carter, Sapp, and Stephens, *State of Police Education* :38, 54; and Carter, David L., and Allen D. Sapp, "College Education and Policing,"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61, 1 (January 1992):10

미션(경찰관 표준과 훈련 위원회)의 노력에 힘입어, 1960년에 겨우 3개의 주만이 훈련을 의무화하였던 반면에 1990년에 이르러서는 50개 주 모두에서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도록 되는 등, 경찰훈련에 있어서도 그 동안 많은 발전이 있어왔다<sup>31)</sup>.

#### ① New Haven 경찰국의 경찰교육 개혁 사례

미국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 경찰국은 종래의 군대식 경찰교육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전혀 새로운 경찰 교육체제를 도입했는데, 경찰학교의 장은 더 이상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이 맡게 되었으며, 경찰교육생들은 더 이상 제복을 입지 않게 되었다. 특히 더욱 중요한 변화는 교육과정의 혁신인데, 이전까지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것은, 철저한 물리적인 훈련이었지만 현재는 Community Policing에 대한 중심적 훈련과,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히는 훈련이 주를 이룬다. 특히 인권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는 주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만 가르쳤지만, 현재 신입경찰관은 성희롱, 편견, 혐오범죄, AIDS, 스트레스, 여성에 대한 폭력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공부한다. 또한 수화를 배우는 추가적인 교육과정도 있다. 학생들은 게이, 레즈비언 등의 사회적 소수자와 New Haven 도시의 대학생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sup>32)</sup> 또한 뉴헤이븐 경찰학교에서는 경험학습을 중요시 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학습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학생들이 그들의 경험과 지식 및 상상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의 참여 교육방식이다. 전통적인 강의실 교육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며 교수의 역할이 종래의 정보 전달자로부터 가이드와 코치의 역할로 재조정된다.

31) Cox, Barbara G., and Richter H. Moore, Jr., "Toward the Twenty-First Century: Law Enforcement Training Now and Then,"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VIII, 3 (August 1992):245-47

32) Bonafonte, Stven J., "Informal Site Visitation of Community-Based Law Enforcement Agencies," unpublished report, Washington, D. C.: U. 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pril 4, 1994. Description of experiential learning from California 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 (POST), Annual Report, 1990, Sacramento, Cal., n.p., n.d.:15.

New Haven 경찰학교에서는 또한, 모든 경찰학교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팀 프로젝트 과제를 부여받는데, 다양한 사회의 실험적인 상황 속에서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팀 별로 노력하게 된다.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학생들은 스스로 무료급식소, 노숙자 보호소, 감옥 혹은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유형의 체험학습은 Community Policing을 받아들이는 경찰서들에 의해 계속 채택되고 있다. Virginia주의 Richmond에서는 신입경찰관들이 경찰학교 교육훈련의 일부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일을 한다. 예들 들어 그들은 공공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경찰에 대한 태도나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수행하기도 하고, 지역 초등학교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기도 한다.<sup>33)</sup>

## ② 뉴욕 존제이 형사사법대학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찰관 교육’<sup>34)</sup>

John Jay 대학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형사사법과 법집행에 초점이 맞춰진 고등교육기관으로, 작은 지역적, 지방적 교육기관으로부터 고등교육과 한 층 진보된 훈련을 제공하는 국가적, 국제적인 교육기관으로 발전해왔다.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법집행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과 프로경찰의 양성이란 목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John Jay 대학이 끼친 최근의 영향중의 하나가 “인간의 존엄성과 경찰”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경찰활동에 있어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가치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데, 인종, 피부색, 종교, 성, 국가 또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권리와 공평한 대우, 그리고 개인적인 존엄성을 인정받을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교육과정은 시민이 경찰관에게 받는 대우에는 이러한 원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다. 본 교육과정은 또한, 이러한 개념과 원

33) 1995년 2월 6일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에서 Craig Fraser와의 대화 중에서.

34) Gerald W. Lynch, "POLICE TRAINING IN HUMAN DIGNITY", in POLICI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mparing Firsthand Knowledge with Experience from the West, 1996 College of Police and Security Studies, Slovenia

리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찰활동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는 반면에, 신생 민주국가에서는 이러한 전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와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경찰과 시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경찰”이라는 본 경찰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각 국이 그들의 민주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들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본 교육과정은 제도화된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주요한 부분들 중의 하나가 법집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주로 경찰이 어떻게 활동하며 시민들에게 경찰관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는 전제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경찰’ 과정은 경찰은 사회의 일부분이고 경찰과 사회는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요구된다. 그 과정은 경찰관의 사적인 삶과 직장생활에 있어서의 덕목과 가치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덕목과 가치들은 경찰관이 되기 훨씬 이전에 배우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 및 친구들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배우게 된다. 물론 그 밀접한 관계는 동정심, 배려, 명예, 존중, 그리고 정직과 성실을 배우게 되는 학습장이다. 이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구성하는 이러한 덕목과 가치들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이러한 덕목과 가치들이 중심을 이룬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행동이 옳고 그름에 관한 그들의 가치관과 일치했는지, 또는 어긋났는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준다. 그 과정은 우리가 습득해 온 행동의 대부분이 반사적이고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경찰의 권한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 과정이 경찰관들에게 그들의 역할을 평가하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과정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초적인 윤리적, 철학적 문제들과 인간의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친다. 개인과 집단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인간 존엄성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참가자들 스스로의 경험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적극적인 그룹 활동과 역할연기, 분임 토의 등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과 실제

사례를 검토해 보면서 인간 존엄성의 개념을 탐구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 과정은, 교수 요원은 방향제지만 하고 참가자들이 능동적인 자기 훈련을 통해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느꼈을 때를 회상하도록 요구받는 것이다. 그 논의는 참가자들의 이러한 부담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경찰의 힘과 권한을 감안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문제로 옮겨 간다. 이 과정에는 지역사회와의 대화, 경찰조직의 가치체계의 구축, 명확하게 규정된 행동강령의 시행 및 경찰과 시민 양쪽 모두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경찰” 과정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4년여의 기간동안 이 과정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중앙아메리카까지 그리고 카리브해에서 유럽까지에 걸친 31개국 경찰관들에게 제공되었다. 그 과정은 참가자들과 운영자들에 의해 평가되었는데, 자메이카에서는 계속된 평가결과 그 과정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유치인들에 대한 대우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나라에서 돌아온 피드백 이 프로그램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인격체로 인식하도록 변화시킨 점에 있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동부와 중부 유럽 국가 경찰관들이 적어놓은 평가서를 보면, 그 프로그램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고양시킨다.”라고 언급되어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제기된 주제를 토론할 때 감동적인 순간들도 있었다.”라고 적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찰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한 공식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참가자들이 이 과정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조사팀의 평가 작업 자체가 그들의 경험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들 중 몇몇은 아직도 교육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ICITAP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여러 나라들에 의해 인간 존엄성 훈련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덕분에 존제이 대학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국제 법집행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다. 과거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의 경찰관리자들을 대상으로 8주간 실시되는 이 새로운 경찰 간부 훈련 프로그램은 존제이

대학이 제공하는 인간 존엄성 과정으로 시작 된다.

미국과 뉴욕 시에서도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로서 주민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인간존엄성과 경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관, 교도관,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 분야 종사자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주민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그 역할 자체가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대상인 시민들의 신뢰 역시 얻어야 한다. 이 인간 존중 교육 프로그램은 경찰의 권위와 시민의 신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탐구한다.

## V. 결 론 - 한국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 방안

### 1. 개 관

앞에서 경찰업무에 있어서의 인권의 의미, 과거 한국경찰이 처해 있었던 특수한 상황과 이를 극복하려는 한국 경찰의 다양한 노력, 경찰 인권의식의 지표가 되는 국내외 인권규범, 달라진 시민의식과 사회 환경 변화 및 국제적 표준 준수 등에 따른 경찰 인권의식 향상의 필요성과 인권의식 향상방안 도출을 위해 참고할 만한 국제사회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한두 가지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즉 먼저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통해 경찰교육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수요원을 양성하여 각급 경찰교육기관에 배치한 후 신입교육부터 보수교육 및 각종 전문교육 등 전 교육과정을 통해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권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효과적인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기술 및 기법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습득해 나가야 하며, 각급 지휘관에게 심도 깊은 인권교육을 실시해 경찰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고 경찰현장에서의 지휘, 감독 및 관리가 인권교육의 효과를 지속 내지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경찰행동강령과 각종 법규 및 절차를 국제적 인권기준과 경찰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신설된 인권보호센터로 하여금 이러한 전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면서 한국 경찰 인권수준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전담부서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 경찰 인권 전담부서인 인권보호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부설 인권센터 등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 체계적 경찰 인권의식 향상방안을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한국 경찰 인권의식향상 방안

### ① 경찰 인권보호센터의 위상 및 역할 강화

2005년 2월 22일 신설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인권경찰상 정립’과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2가지 기본 목표를 가지고 출범하였다. 인권보호센터는, 기존 경찰청 범죄 피해자대책실을 확대 개편하고, 일선 경찰관서 수사과장과 청문감사관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경찰직무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인권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학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인권수호위원회」를 경찰청에 설치하고, 지방청에는「인권모니터요원」을 운영하여, 인권침해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 ‘국민참여형 인권감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보호경찰직무규칙(가칭)’을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현장 지도·조사기능을 강화하며, 여경수사관을 증원하는 등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장물범·여죄수사 강화를 통해 피해품을 적극 회수하고, 「이동식 피해자조사실」을 운영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업무수행상 인권침해 취약요소를 정밀 분석, 인권 매뉴얼을 발간하고 시청각·사례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체질화 할 방침이다.<sup>35)</sup> 인권보호센터의 기본 임무는 아래와 같다 :

- 인권 관련 법령·지침 개정
- 인권모니터 역할 적극 수행
- 인권친화적 유치장 환경조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 발굴
-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충실한 수사시스템 마련

35) 경찰청 브리핑, “경찰청에「인권보호센터」설치, ‘인권 중심의 경찰활동’ 강력 추진키로”, 2005년 2월 22일

- 수사과정의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통지시스템 구축 및 신변보호 내실화
- ‘인권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sup>36)</sup>

경찰청에서 ‘인권경찰 구축’의 가치를 내걸고 야심 차게 출범한 인권보호센터가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보호센터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법규-정책-조직문화-지휘 관리 및 감독 전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면서 한국 경찰 인권수준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전담부서가 되는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부설 인권센터 등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명실상부한 ‘한국경찰 인권사령탑’이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몇 가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직, 인력, 예산”의 3대 요소다. 현 인권보호센터는 수사국이라는 특정 부서 내에 속한 계선조직으로 총경을 그 장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구조상 특성은 인권보호센터가 경찰업무전반에 걸친 인권사령탑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원천적인 한계를 내포한다. 국장, 담당관, 각급 학교장 등 실제 정책과 규정, 해당 기능의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찰 각 기능의 장에게 인권친화적인 결정을 내리고 지휘 및 관리기법을 사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조직 구조적 한계는 인권보호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은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외국 경찰인권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인권기준을 준수하면서 경찰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 및 기술의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경찰인권 전담부서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 인력, 예산 차원에서의 독자성과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인권보호센터장을 최근에 신설, 공모한 ‘치안정책연구소장’처럼 개방형 직위로 조정하여 자격과 명망, 경찰인권에 대한 헌신의지가 있는 외부 민간전문가나 고

36) 경찰청 피해자대책실, “인권담당기구 설립에 따른 기구 명칭 공모”, 2005. 1. 28, 경찰청

위직 경찰간부로 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필수 경찰관 요원 이외의 직위는 모두 개방형 계약직으로 함으로써 그 정원과 인력확보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예산확보와 운영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직, 인력, 예산 차원에서 혁신 없이는 경찰청장이나 수사국장 등 지휘관의 교체에 따라 인권보호센터의 위상,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변질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경찰인권교육 체계 및 방법 개선

### 가. 기존 경찰인권교육의 문제점

그동안 한국 경찰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인권교육 실시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이며 인권교육을 이수한 경찰관들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인권교육이 한국경찰의 현실과 특성에 맞게 준비되고, 시행된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 등 외부, 혹은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찰의 문제를 지적당하고 질책당하며 무조건적인 변화를 강요당하는 형태로 행해져 교육에 임하는 경찰관들의 심리적 반발을 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02년도 경찰인권교육에 대한 경찰관들의 강의평가에서 다수의 경찰관들이 인권위원회의 경찰인권교육이 학습자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교육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sup>37)</sup> 교육을 실시한 외부기관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바다.

이러한 기존 경찰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앞서 살펴본 유엔 등 국제기구나 인권단체, 외국 경찰인권교육 등에서 강조하는 원칙들이 무시되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1. 교육장소

우선, 교육장소면에서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외국에서는 경찰업무현장과 멀리 떨어진

3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인권교육방법론개발 사업기본계획(안)”, 2003년 5월

곳을 인권교육 장소로 택하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인권교육은 대부분 해당 경찰관서 강당이나 청사 내에 설치된 지방경찰학교 등 현장과 동일하거나 밀접한 장소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장소적 문제는 우선 인권교육에 임하는 경찰관들의 심리상태가 마음을 열고 기존의 인식을 바꾸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태도와 인식을 바꾸고 습관과 행동을 변화시킬 ‘심리적 혁명’을 불가능하게 하는, ‘몸은 교육장에 있지만 마음은 현장 업무에 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한다. 아울러 계급과 격무에 찌들린 직무 스트레스가 그대로 이어진 상황에서의 인권교육이다 보니 교육생 스스로가 존중받고 ‘목적’으로 대우받으며 의견과 느낌이 소중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심리상태에 놓이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태도와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는 근본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 -. 강사-피교육생 관계 및 일방적 강의식 교육방법

기존의 경찰인권교육은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정답을 가지고 있는 ‘인권 강사’가 일방적으로 경찰 교육생들을 훈계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타하며 개선을 강요하는 형식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강사-피교육생 관계는 유엔 등 국제기구나 외국 경찰인권교육이 강조하는 ‘동료상호간 교육 방식 (Collegial presentations)’과 배치된다. 동등한 동료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심리적 거부감 없이 인권 지식과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 함양, 인권기준을 준수하면서 경찰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 습득,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의 행동변화를 이룬다는 경찰인권교육의 기본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던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직된 강사-피교육생 관계에서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국제기구나 외국에서와 같은 ‘참여적 교육기법’이 적용될 틈이 없었다.

#### -. 교수요원 교육의 미비

이렇듯 상대적으로 ‘인권적,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상정된 외부기관이나 단체 혹은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인권적, 도덕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상정된 경찰을 대상으로 교

육하는 것을 한국 경찰인권교육의 기본 형태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경찰 스스로 경찰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와 외국 인권교육의 기본적 접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 경찰 인권교육의 첫 출발점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교수요원 교육(training for trainers)’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경찰청과 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춰 경찰 인권강사 양성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이다.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실시된 ‘경찰인권강사 교육’에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경찰관들과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들이 인권위원회가 새로 개발한 ‘동료간 촉진모형에 의거한 참여식 교수방법’을 직접 체험하며 전수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 스스로 운영하는 상설적인 교수요원양성 교육과정이 설치되지 않아 아직 제대로 된 경찰 인권 교수요원 양성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프로그램과 내용, 사례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준비하였을 뿐 경찰업무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기에 미흡하다.

#### ㄱ. 지휘관 인권교육 부재

여전히 경찰인권교육은 일선 하위직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교육과 업무현실, 지휘 및 감독과 정책 간 연계가 담보되어 있지 않다. 각급 경찰지휘관 먼저 같은 내용의 인권교육과 인권기준을 지키면서 효율적인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찰지휘, 감독 및 경영기법 교육을 이수해야 일선 경찰관들이 인권교육을 받고 업무로 복귀했을 때 교육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을 통해 형성된 인권친화적 태도와 감수성, 행동을 유지 내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경찰 인권교육 개선책

##### ㄱ. 상설‘인권교육센터’의 설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인권센터’와 같은 상설적인 인권교육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장소는 경찰업무현장에서 떨어져있고, 충분한 교육장을 갖추고, 쾌적한 숙박시설 및 생

활기반이 구비되어 있으며 교수요원의 상주 혹은 상근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큰 예산 투입 없이 이용이 가능한 곳은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등 경찰교육기관이나 충남 대천 등 관광 휴양지에 위치한 ‘경찰 휴양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인권교육의 특성상 기존 경찰직무교육에 추가하기보다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다.

#### -. 경찰인권교육 매뉴얼의 제작, 활용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제작, 사용 중인 경찰인권교육매뉴얼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각 대상별 인권교육매뉴얼을 참고한 한국경찰 ‘인권교육매뉴얼’을 제작, 활용하여야 한다. 경찰 인권교육매뉴얼은 기존의 교과서 형태의 딱딱한 사실과 정보, 이론과 법규의 나열이 아니라 각 경찰업무상황에 적합한 인권법규 및 기준과 이를 준수하면서도 경찰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방법의 종합적 제시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권교육매뉴얼은 해당 교수요원의 특성과 장단점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교육생의 경험과 업무와 교육정도 등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사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고 교육대상자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경찰관 스스로 교육생이자 강사가 되고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동료 상호간 교육방식’, 이론보다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실무위주 교육’,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감수성 향상’적 접근, 맞춤형 교육설계와 지속적인 교육내용 향상을 담보하는 ‘사전 및 사후 평가’ 등을 인권교육매뉴얼 작성의 ‘철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을 기울여 작성한 경찰인권교육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더욱 경찰업무친화적으로 보완하고 유엔 인권센터 경찰매뉴얼을 참고한 수정을 통해 보다 유용한 경찰인권교육매뉴얼을 만드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참고로 필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성인교육방법론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경찰인권교육 매뉴얼 일부를 부록2에 첨부하였다.

#### -. 교수요원 양성 및 경찰지휘관 인권교육의 우선 실시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효과를 가능하게 하려면, 기존의 일선 하위직 중심 인권교육을 과감히 탈피하여 ‘인권교육 교수요원’ 양성과정 및 ‘경찰지휘관 인권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그 이후에 일선 하위직 경찰관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교육 수용도도 높아지며 교육 후 교육효과의 연장 및 강화가 가능하다. 우선, 위에 제시한 상설 인권교육장소 및 경찰인권교육매뉴얼을 마련한 후,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시범실시했던 ‘경찰인권강사 교육’을 상설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후, 경찰대학에서 실시하는 고급간부(경감, 경정) 과정 및 고위정책과정(총경)에 인권강사교육과 같은 시간 및 강도의 ‘경찰관리자 인권교육’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무관 이상 경찰경영자들도 유사한 인권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인권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③ 경찰조직문화 개선

인권교육의 실시나 특별한 시책의 시행만으로는 전반적인 경찰 인권의식 향상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부분적 효과도 지속되리라 보장할 수 없다. 경찰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조직문화와 관행을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고 인권존중을 경찰업무수행의 가장 기본적 가치로 만드는 것이다. 경찰 수뇌부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서는 다음 ‘인권친화적 경찰문화 조성방안’을 참고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친화적 경찰만들기에 주력하여야 한다.

#### 가. 관리자의 헌신과 참여

- 행정문화와 조직문화의 특성상 고위 관리자의 역할은 조직전반의 관행형성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친화적 경찰문화의 구축을 위해서는

고위 관리자가 인권적 경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충분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경찰은 ‘인권경찰상 정립’의지가 남다른 만큼 그 의지가 제대로 현실화되기만 한다면 인권친화적 경찰문화 구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일선 경찰관의 자율적 참여

- 어느 정책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정책의 성공적 수행이 어렵다. 특히 “인권존중”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경우, 위로부터 강요되는 것으로 인식될 때 적대감과 갈등이 초래되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정책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일선 경찰관이 참여하여 계획 형성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 다. 충분한 자원의 제공

- 어떤 정책이든 구호로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자원의 공급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파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특히 능력 있는 경찰관이 인권친화적 경찰문화 구축을 위한 중심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의 공급이 절대적이다.

#### 라. 네트워킹을 통한 다수의 참여와 공동의 노력

- 인권친화적 경찰문화의 구축은 경찰 내외의 다수의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또한 이러한 다수의 참여와 지지는 정책의 성공을 위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이를 위하여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수가 참여하여 인권친화적 경찰문화의 구축을 위한 생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이 계획,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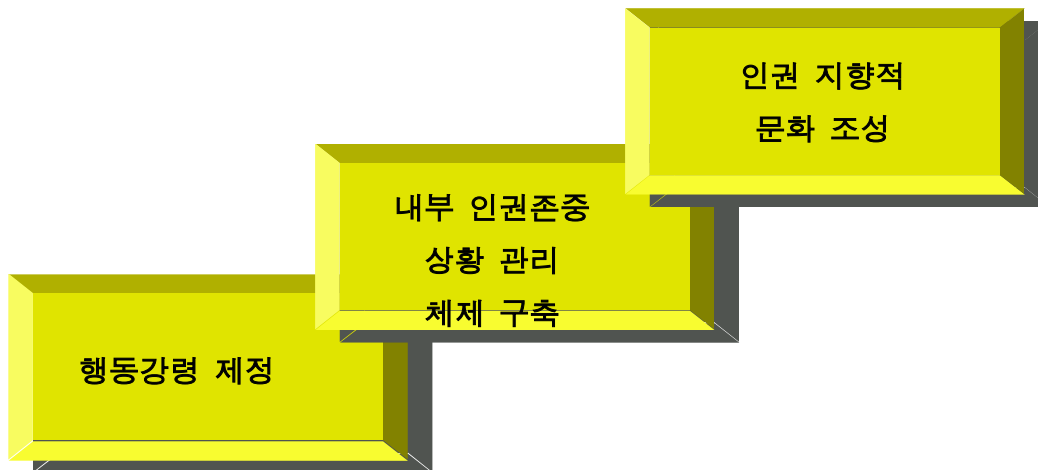
#### 마. 인권친화적 경찰문화의 구축단계

인권친화적 경찰문화의 합리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의 수립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며 인권친화적 경찰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의 수립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권친화적 경찰문화의 구축을 위한 전략의 수립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서 추진한다:

- 1단계 : 행동강령의 제정
- 2단계 : 내부 인권존중 상황 관리 체제 구축
- 3단계 : 인권 지향적 문화의 조성

[그림 2] 인권친화적 경찰문화의 전략



-. 1단계 계획 : 행동강령의 제정

- 경찰이 지향해야 할 인권적 가치와 신념을 자율적인 절차에 의해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 경찰의 특성상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일선 경찰관의 업무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권적 갈등상황의 처리를 도와주는 분명하고 체계적인 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 일선 경찰관의 불평과 고충의 처리를 위한 효과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2단계 : 내부 인권존중 상황 관리체제의 구축

- 인권침해적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발견하고 그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내부의 자율적인 인권관리체제를 구축하여,
- 경찰관 개개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수행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 다양한 일선 경찰관의 직무특성에 맞도록 합법적이고 인권적으로 타당한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하며
- 인권존중 상황관리 체계와 절차에 대한 주기적 심의와 개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3단계 : 인권 지향적 문화의 조성

- 현재 경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권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문화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개발하고
- 인권친화적 문화가 내면화되도록 일선 경찰관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 일상적 업무와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경찰조직 관리방식을 개선한다

## 참 고 문 헌

6월항쟁 이야기, <http://www.610.or.kr/story/evolve.php>

경찰청 브리핑, “경찰청에 「인권보호센터」 설치, ‘인권 중심의 경찰활동’ 강력 추진키로”,  
2005년 2월 22일

경찰청 피해자대책실, “인권담당기구 설립에 따른 기구 명칭 공모”, 2005. 1. 28, 경찰청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인권교육방법론개발 사업기본계획(안)”, 200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2002년도 인권상황 실  
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5년 국정감사 자료

동아일보, 2002-12-25 농협유통 前대표 이은성씨 “검찰이 가혹행위” 손배訴

세계일보, 2003-03-15 "김원치검사가 고문지시 했다"

조선일보, 2003-02-20, “검찰서 자백내용 유죄증거 인정” 형사소송법 위헌심판 제청

조효제, “인권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 강의안 시리즈3 [검찰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2002. 12

중앙 USA 특집, “LA 폭동 그리고 10년, 폭동 촉매역할 로드니 킹 사건”, 2003. 4. 25

중앙일보, 2002-11-06 “현직검사 구속영장 불명예”

Bonafonte, Stven J., "Informal Site Visitation of Community-Based Law  
Enforcement Agencies," unpublished report, Washington, D. C.: U. 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pril 4, 1994.

Carter, Sapp, and Stephens, State of Police Education :38, 54; and Carter, David L., and Allen D. Sapp, "College Education and Policing,"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61, 1 (January 1992):10

Cox, Barbara G., and Moore, Richter H. Jr., "Toward the Twenty-First Century: Law Enforcement Training Now and Then,"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 VIII, 3 (August 1992):245-47

Description of experiential learning from California 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 (POST), Annual Report, 1990 , Sacramento, Cal., n.p., n.d.:15.

Harry Mount "New Orleans Police beat up black man", Daily Telegraph, 11/10/2005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POL300041998?open&of=eng-326>

<http://www.humanrights.go.kr>

Lynch, Gerald W. "POLICE TRAINING IN HUMAN DIGNITY", in POLICI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mparing Firsthand Knowledge with Experience from the West, 1996 College of Police and Security Studies, Slovenia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A Manual of Human rights Training for the Police" –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5, UN, New York and Geneva, 2002.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 Challenge of Crime in a Free Society," in Classics of Criminology , ed. Joseph E. Jacoby, Oak Park, Ill.: Moore Publishing Company, Inc., 1979:328.

Reiner, Robert., The Politics of The Police 3rd Edi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부록 1. 국제인권 규범

### - 세계인권선언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인권규약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실]

#### 1.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지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할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2.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 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 제 1 부

### 제1조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 2 부

###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

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제4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사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3 부

###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

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 제8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의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 (ii)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
-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 시에 요구되는 의무
-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

##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이유를 통고 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 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되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 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 받을 것

-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 (d)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 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 받도록 할 것.
  -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15조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 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 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

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 노동기구 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 중 및 혼인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자녀

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제24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제 4 부

### 제28조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 의 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 제29조

1. 이사회 의 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 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지명 받을 수 있다.

### 제30조

1.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의 보충선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회의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전에, 이 규약 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하는 국명의 명사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 전에 동 명단을 이 규약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이사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이 규약 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 다수표 및 절대 다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 제31조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 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 회의의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지리적 안배와 상이한 문명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 제32조

1. 이사회 회의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제30조제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 제33조

1. 이사회의 어느 한 위원이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할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동 위원의 결석을 선언한다.
2. 이사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그 좌석의 결석을 선언한다.

## 제34조

1. 제33조에 의해 결석이 선언되고, 교체될 결석위원의 잔여임기가 결석 선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결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작성, 이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결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결석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35조 이사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 총회가 이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제3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 제37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 회의를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 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 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제38조 이사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제39조

1. 이사회는 임기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a)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 (b)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 (a)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
  - (b)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 후 해당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의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 관련 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 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에 권한한다.

- a)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던가, 현재 취하고 있던가 또는 취할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 (b)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 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

를 가진다.

- (c)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d) 이사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 토의를 가진다.
- (e) “(c)”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 (f) 이사회는 회부 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b)”에 언급된 관계 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g) “(b)”에서 언급된 관계 당사국은 당해 문제가 이사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h) 이사회는 “(b)”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 (i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키고 관계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계 당사국에 통보된다.

2. 이 조의 제 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

는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 제42조

1. (a)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 (b)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비밀 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 위원 중에서 인권이사회 위원 3분의2의 다수결투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계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 문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

에도 12개월 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 (a)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 문제의 심의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 (b)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 (c) 조정위원회가 “(b)”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국간의 쟁점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 및 구두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 (d) “(c)”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여부를 통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의한 이사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분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3조 이사회의 위원과 제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44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헌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헌장 및 협약 하에서의 인권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

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한다.

## 제 5 부

제46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7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6 부

### 제48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 제49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50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 제5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 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52조 제4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a) 제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53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 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일천구백육십육년 십이월 십구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규약에 서명하였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 규약은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 연합헌장상의 국

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 제 1 부

### 제1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 2 부

###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

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제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리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이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

거나 또는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 3 부

### 제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가.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 (1)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을 보장
- (2)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다.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게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라.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가. 모든 사람의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나.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 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다.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 질서를 위하여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라.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사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이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성립된다.
2. 임신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중의 근로 임신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들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한 유급 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는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가.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나.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 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가.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나.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
  - 다.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라.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속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가.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 나.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 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다.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 라.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 마.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 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 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그 본토나 자국 관할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무상으로 초등 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 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나.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다.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창작성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 제 4 부

###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가.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 사회에 송부한다.  
 나.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인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전문기구의 창설규정에 따라 전문기구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경우, 동 보고서 사본 또는 그 내용 중의 관련 부분의 사본을 동 전문기구에 송부한다.

### 제17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경제사회 이사회가 규약 당사국 및 관련 전문기구와 협의한

후,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자국의 보고서를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2. 동 보고서는 이 규약 상의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이 이미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에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동 정보에 대한 정확한 언급으로서 족하다.

제18조 경제사회 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의 국제연합 헌장 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구가 동 기구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이 규약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취된 진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전문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택한 규정의 행에 관한 결정 및 권고의 상세를 포함할 수 있다.

제19조 경제사회 이사회는 제16회 및 제17조에 따라 각국이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및 제18조에 따라 전문기구가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중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검토, 일반적, 권고, 또는 정보를 위하여 적당한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송부 할 수 있다.

제20조 이 규약의 당사국과 관련 전문기구는 제19조에 의한 일반적 권고에 대한 의견 또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어떠한 문서에서도 그와 같은 일반적 권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경제사회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경제사회 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의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와 이 규약에

서 인정된 권리의 일반적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경제 사회 이사회는 이 규약의 제4부에서 언급된 보고서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국제연합의 타기관, 그 보조기관 및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여하는 전문기구가 각기 그 권한내에서 이 규약의 효과적, 점진적 사실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의 타당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제2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조치에는 협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및 관계정부와 협력하여 조직된 협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별 회의 및 기술적 회의의 개최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24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헌장 및 전문기구 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5 부

### 제26조

1. 이 규약의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 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 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의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 제27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28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 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 제29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 연합 사무 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 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 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이 규약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 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30조 제26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27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29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 제31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국,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 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26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4. 고문방지협약 (CAT: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본 협약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제 권리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연합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세계 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유의하며,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던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에도 유의하고,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금지를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 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부

### 제1조

1. 본 협약의 목적 상 “고문”이라는 용어는 개인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고 그 개인 또는 제3자가 행하였거나 행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개인을 처벌하거나 그 개인 또는 제3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근거한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이 또한 이러한 사람의 교사에 의하거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그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 및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합법적인 제재 조치로부터 야기되고 이에 고유한 또는 이에 부수적인 고통 또는 피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2. 본 조항은 적용범위가 더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수 있는 여하한 국제문서 또는 국내입법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2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토 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여타 조치를 취한다.
2.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여하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3. 상급관리 또는 공적인 기관으로부터의 명령은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 제3조

1. 어느 당사국도 개인을 그가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근거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관기관은 적절하다면 관련 국가에서의 심한, 극악한 또는 대량의 인권 위반의 고질적인 존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 제4조

1. 각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국형법에 의하여 범죄가 됨을 보장한다. 고문의 미수 및 고문에의 공모 또는 가담을 구성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된다.
2. 각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들이 그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에 의하여 처벌되도록 한다.

## 제5조

1. 각 당사국은 아래의 경우에 제4조에서 언급된 범죄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가. 범죄가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토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발생한 경우
  - 나. 범죄 혐의자가 발생한 경우
  - 다. 피해자가 자국민이며 자국의 관할권 행사가 적절하다고 간주할 경우
2. 각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토 내에 있거나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어느 국가에도 동인을 제8조에 따라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본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된 어떠한 형사 관할권도 배제하지 않는다.

## 제6조

1. 자국 영토 내에 제4조에서 언급된 범죄 혐의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은 입수 가능한 정보의 검토 후 상황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납득되면 즉시 그를 구금하거나 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 구금이나 다른 법적 조치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취하여지며 행사 또는 인도 절차가 시작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계속될 수 있다.
2. 그러한 국가는 즉시 사실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3. 본 조 제1항에 따라 구금중인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인의 국적국의 적절한 대표와 또는 무국적자일 경우 그가 일상적으로 체재하는 국가의 대표와 즉각적인 연락을 취함에 있어 도움을 받는다.
4. 한 국가가 본 조에 따라 개인을 구금하였을 때에는 동인의 구금사실 및 동인의 억류를 정당화하는 상황을 제5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들에게 즉시 통보한다. 본 조 2항에 규정된 예비조사를 실시한 국가는 그 결과를 즉각 상기 국가들에게 통보하

고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도 표명한다.

#### 제7조

1.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토 내에 제4조에 언급된 범죄의 혐의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은 제5조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 동 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기소를 위하여 이 사건을 소관기관에 회부한다.
2. 이 기관은 자국법 하에서 중대한 성격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다. 제5조 제2항에서 언급된 경우에 기소 또는 선고를 위하여 요구되는 증거의 기준은 어떤 경우에도 제5조 제1항에서 언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덜 엄격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
3. 제4조에 언급된 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절차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소송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한 처우를 보장받는다.

#### 제8조

1. 제4조에 언급된 범죄는 당사국들간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 상에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들은 상호간에 체결되는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에 그러한 범죄들을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포함시키도록 조치한다.
2.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일 당사국이 자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타 당사국으로부터 인도 요청을 받을 경우, 동 협약을 그러한 범죄들에 관한 범죄인 인도의 법적 근거로서 간주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는 요청 받은 국가의 법이 제시하는 여타 조건에 따라야 한다.
3.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국가들이 아닌 당사국들간에는 요청 받은 국가의 법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그러한 범죄들을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인정한다.
4. 그러한 범죄들은 당사국들간의 인도목적에 위하여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는 물론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영토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취급된다.

## 제9조

1. 당사국들은 제4조에서 언급된 범죄에 관한 형사상 절차와 관련, 동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재량 하에 있는 모든 증거의 제공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상호간에 제공한다.
2. 당사국들은 상호간에 존재할 수 있는 사법공조에 관한 모든 조약에 따라서 본 조 제1항의 의무를 수행한다.

## 제10조

1. 각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체포, 억류 또는 수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심문 또는 처우에 관련될 수 있는 법 집행 인사, 민간 또는 군 및 의학적 인사, 공무원 및 기타 인사들의 훈련에 고문금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이러한 인사들의 임무 및 직능에 관하여 발하여진 규정 또는 지침에 고문의 금지를 포함시킨다.

제11조 각 당사국은 여하한 경우의 고문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내에서의 여하한 형태의 체포, 억류 또는 수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및 처우에 관한 제도와 어울러 신문(訊問)규칙, 지침, 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제12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내에서 고문이 행하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소관기관이 즉각적이고 공평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보장한다.

제13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내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이 소관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소관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소관기관에 의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동 사건에 대한 조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고소자 및 증인들이 고소 또는 증거제시의 결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당한 처우 또는 협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 제14조

1. 각 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으며, 가능한 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2.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법 하에서 인정되는 피해자 또는 여타 사람들의 보상요구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 각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여하한 진술도 고문 혐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진술이 행하여 졌다는 증거로서 원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증거로서 원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 제16조

1. 각 당사국은 제1조에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않는 여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이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에 의하거나 또는 그들의 교사에 의하거나 또는 그들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행하여 질 때에는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토 내에서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한다. 특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포함된 의무는 고문에 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2. 본 협약의 규정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금지하거나 범죄인 인도 또는 추방에 관련되는 여타 국제문서 또는 국내법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2 부

### 제17조

1. 고문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가 설립되어 아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동인들은 개인자격으로 근무한다. 전문가는 공평한 지역적 배분 및 법적 경험 소유 인사들의 참여 유용성을 고려하여 당사국들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들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립된 인권 이사회의 위원이면서 고문방지 위원회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인사들의 지명 유용성에 유의한다.
3. 위원회의 위원선출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하여 개최되는 격년주기의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과반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4. 최초의 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각 선거일 최소 4개월 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3개월 이내에 후보를 지명하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후보자의 명단을 지명국가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준비하여 당사국에 제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후 즉시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여타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 위원을 임명한 당사국은 동인의 잔여 임기동안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전문가를 전 당사국 과반수의 동의를 조건으로 지명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이 동 지명내용을 각 당사국에 통보한 후 전 당사국의 과반수가 6개월 이내에 부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전 당사국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8조

1.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체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가. 의사정족수는 위원 6인으로 한다.
  - 나.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협약 상 위원회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한다.
4.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최초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최초회의 이후 위원회 회의 절차규칙에 규정된 시기에 회의를 개최한다.
5. 전 당사국은 본 조 3항에 따라 직원 및 시설을 위한 경비 등 국제연합이 부담한 비용을 국제연합에 변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당사국 및 위원회 회의와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9조

1. 전 당사국은 본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내에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하여 온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 전 당사국은 자국이 취한 모든 새로운 조치에 관한 추가보고서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여타 보고서를 매 4년마다 제출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 보고서들을 전 당사국에 송부한다.
3. 각 보고서는 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되며, 위원회는 보고서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의견들을 관련 당사국에 전달한다. 관련 당사국은 이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작성된 연례보고서에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과 함께 본 조 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를 포함시킬 것을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관련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본 조 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사본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 제20조

1. 위원회가 어느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믿을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조토록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한다.
2.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견해와 아울러 여타 입수 가능한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비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각 위원회에 보고할 1인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3. 본 조 제3항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그러한 조사는 관련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관련국 영토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 또는 위원들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동 조사결과 및 정황 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또는 제안을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5. 본 조 1항~4항에서 언급된 위원회의 모든 절차는 비밀로 이루어지며 동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에 관한 절차가 완결된 후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제24조에 따른 연례보고서에 동 절차의 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포함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제21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동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위원회가 접수 및 심리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본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자국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본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본 조에 접수된 통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가. 일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 통보로써 동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서를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거나, 현재 취하고 있는 또한 취할 수 있는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 나.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 통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 당사국 쌍방에 만족스럽게 조정하지 아니할 경우, 일 당사국은 위원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 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만 당해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본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규정

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 위원회는 본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마. “다”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당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특별조정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여타 문제에 관하여도 “나”호에 언급된 관련 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 “나”호에서 언급된 관련 당사국은 당해 문제가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아. 위원회는 “나”호에 의한 통보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1) “마”호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할 경우, 위원회는 사실관계와 동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2) “마”호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련 당사국에 통보한다.

2. 본 조의 제 규정은 본 협약의 5개 당사국이 본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러한 철회는 본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여하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일 당사국에 의한 추가 통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 제22조

1. 본 협약 당사국은 일 당사국에 의한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국

관할권하의 개인들로부터의 또는 개인들을 대신한 통보를 위원회가 접수 및 심리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본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2. 위원회는 익명이거나 그러한 통보 제출권리의 남용 또는 본 협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하한 통보도 본 조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본 조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관해 제1항에 의해 선언을 하였으며, 동 협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동 당사국은 통보 접수 6개월 내에 그 사건의 내용 및 구제조치를 취한 경우 그 구제조치를 해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개인으로부터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그리고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본 조에 의하여 접수된 통보를 심의한다.
5.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본 조에 의한 개인의 어떠한 통보도 심의하지 않는다.
  - 가. 같은 문제가 어떤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의하여 심사되지 않았거나 또는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 나. 개인이 모든 가능한 국내 구제조치를 취하였을 것 다만,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동 협약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6. 위원회는 본 조에 의해 통보를 심사할 때는 비공개회의를 개최한다.
7. 위원회는 위원회의 견해를 관련 당사국 및 개인에게 제출한다.
8. 본 조의 제 규정은 본 협약의 5개 당사국이 본 조 제1항에 의해 선언을 하였을 때에 발효한다.

동 선언은 당사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타 당사국들에게 송부한다. 동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

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동 철회는 본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여하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인에 의한 또는 개인을 대신한 추가 통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위원과 제21조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조정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24조 위원회는 당사국 및 국제연합 총회에 본 협약을 따른 연례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 3 부

#### 제25조

1.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26조 본 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제27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제28조

1.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에 제20조에 따라 부여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2. 본 조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 제29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을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 찬성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본 협약의 각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동 통보접수 후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3분의 1이상의 당사국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그 승인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2. 본 조 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본 협약 당사국의 3분의 2가 각 당사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음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을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 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본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의하여 구속된다.

## 제30조

1.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그들 중 1개국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재판 요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당사국이 중재재판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당사국 중 일방은 국제사법 재판소 규정에 따른 요청으로 동 분쟁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에 자국이 본 조 제1항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본 조 제1항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3. 본 조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 제31조

1. 일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지 1년 후에 유효하게 된다.
2. 동 폐기는 그것이 유효하기 전에 발생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협약 상의 의무로부터 당사국을 면제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동 폐기가 유효하기 전에 이미 위원회에 의하여 심사되고 있는 여하한 문제의 계속적인 심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일 당사국의 폐기가 유효하게 된 날 이후에는 그 국가에 대한 여하한 새로운 문제의 심사도 개시하지 않는다.

제32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과 본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 가.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27조에 의한 본 협약에 발효일자 및 제29조에 의한 개정안의 발효일자

다. 제31조에 의한 폐기

### 제33조

1.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 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들에게 송부한다.
5. 인종차별철폐협약 (CERD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본 협약의 협약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이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만인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시키고 촉진하는 국제연합의 목적 중의 하나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국제연합과의 협조 아래, 공동적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하기로 서약하였음을 고려하고, 세계인권 선언이 만인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함을 선언하고, 또한 특히 인종, 피부색 또는 출생지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하지 않고 동 선언에 언급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떠한 차별의 고무에 대해서도 법의 균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어떠한 형태로든 또한 어디에 그들이 존재하던 식민주의와 그리고 그와 결탁한 차등과 차별의 모든 관행을 규탄하고, 1960년 12월 14일 자 식민지 및 그 국민에 대한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총회결의 1514(XV))이 그들을 신속히 무조건 종식시켜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또한 엄숙히 선언하였음을 고려하고, 1963년 11월 20일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총회결의 1904(XVIII))이 전세계에서 모든 형태와 양상의 인종차별을 속히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보할 필요성을

엄숙히 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인종차별에 근거한 어떠한 우수 인종 학설도 과학적으로 허위이며, 도덕적으로 규탄 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위험하며, 또한 어느 곳에서든 이론상으로는 실재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정당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의 기원을 근거로 한 인간의 차별한 국가간의 우호적이며 평화적인 관계에 대한 장애물이며 국민간의 평화와 안전을,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단일 국가내에서 나란히 살고 있는 인간들의 조화마저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인종적 장벽의 존재가 어떠한 인류 사회의 이상과도 배치됨을 확신하고, 세계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실증적인 인종차별의 실현과 또한 인종적 우월성 또는 증오감에 근거를 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인종분리 또는 격리와 같은 정부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모든 형태와 양상에 있어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조치를 채택하고, 인종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종주의자의 이론과 실재를 방지하고 격퇴시키며 모든 형태의 인종분리 및 인종차별이 없는 국제공동 사회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1958년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1960년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가 채택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협약에 유의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에 포용된 제반원칙을 실행할 것과 이 목적을 위하여 실제적 조치의 최단 시일 내 채택을 확보할 것을 열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부

###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국민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2. 이 협약은 협약당사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의 어떤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체결국의 법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단, 이러한 규정은 어느 특정 국적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4. 어느 특정 인종 또는 종족의 집단이나 개인의 적절한 진보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취해진 특별한 조치는, 그러한 집단이나 개인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향유와 행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인종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그러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상이한 인종집단에게 별개의 권리를 존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조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계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2조

1. 협약당사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간의 이해증진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추구할 책임을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
  - 가. 각 협약당사국은 인간이나, 인간의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또는 인종차별을 실시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또한 모든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그러한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증할 의무를 지고
  - 나. 각 협약당사국은 인간이나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후원, 옹호 또는 지지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 다. 각 협약당사국은 어디에 존재하던 간에 인종차별을 야기시키거나 또는 영구화시키는 효과를 가진 정부, 국가 및 지방정책을 면밀히 조사하고 또한 상기효과를 가진 법규를 개정, 폐기 또는 무효화시키는 효율적 조치를 취하며
  - 라. 각 협약당사국은 어느 인간,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해당 사정에 따라 이 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써 금지하고 종결시키며
  - 마. 각 협약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다종족 통합주의자 단체와 인종간의 장벽을 폐기하는 운동 및 기타 방법을 장려하고, 또한 인종 분열을 강화할 성향이 있는 어떠한 것도 막아야 한다.

2. 협약당사국은, 상황이 적절한 경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에 있어서 특정 인종집단 또는 개인의 적절한 발전과 보호를 보증하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들에게 완전하고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보장토록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 별개의 상이한 인종집단에 대한 불평등 또는 별개의 권리를 존속시키는 일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협약당사국은 특히 인종분리와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을 규탄하고, 그들 관할 권내영역에서 이런 부류의 관행을 방지, 금지 및 근절시킬 의무를 진다.

제4조 협약당사국들은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은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협약당사국은 이와 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협약당사국은,

- 가.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 나.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 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어떠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 다.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협약당사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가. 법원 및 기타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나. 정부 관리에 의해 자행되거나 또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해 자행되거나 간에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인간의 안전 및 보호를 받을 권리

다. 정치적 권리, 특히 참가하는 권리, 보통 평등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 각급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하는 권리, 그리고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을 할 권리

라. 기타의 민권, 특히

- (1) 당해 협약당사국 국경이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2) 자국을 포함,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하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권리
- (3) 국적 취득권
- (4)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
- (5) 단독 및 공공재산 소유권
- (6) 상속권
- (7)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8)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9)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특히

- (1) 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는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 노동 동일임금, 정당하고 알맞는 보수 등에 대한 권리
- (2)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 (3) 주거에 대한 권리
- (4)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
- (5)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 (6)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

바.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 제6조 협약당사국은 권한 있는 국가법원 및 기타 기관을 통하여, 본 협약에 반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인종차별 행위로부터 만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며 또한 그러한 차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하는 권리를 만인에게 보증한다.

제7조 협약당사국은 특히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선언 및 이 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 제 2 부

### 제8조

1.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이후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협약

- 당사국이 자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 덕망이 높고 공평성이 인정된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상기 전문가는 개인 자격으로 집무하며, 이들의 선정에는 공정한 지역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형태를 대표하도록 고려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협약당사국이 지명한 후보자 명단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 각 협약당사국은 자국 국민 중에서 후보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3. 제1차 선출은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실시된다. 최소한 선출일 3개월 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약당사국에 서한을 송부, 협약당사국들로 하여금 2개월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후보자를 지명한 협약당사국명을 명기, 피지명된 전 후보자 명부를 알파벳순으로 작성하여 동 명부를 협약당사국에게 제시한다.
  4. 동 위원회 위원은 선출은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한 협약당사국회의에서 실시된다. 협약당사국의 2/3가 정족수를 이루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고 투표를 협약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 다수표를 얻는 후보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
  5. 가. 이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러나 제1차 선출에서 선출된 위원 중 9명의 임기는 2년 만에 만료된다. 이 위원 9명의 성명은 제1차 위원 선출 직후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첨으로 선택한다.
    - 나. 부정기적인 공석의 충원에 있어서, 자국 전문가가 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당해 협약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국 국민 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지명한다.
  6. 협약당사국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의 제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들의 비용을 책임진다.

## 제9조

1. 협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하도록 채택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제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한다.

- 가. 당해 협약당사국에 대하여 협약의 발효 후 1년 이내
- 나. 그 후 매2년마다 그리고 위원회가 요청할 때
2. 위원회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자신의 활동에 관하여 매년 국제연합 총회에 보고하며, 협약당사국으로부터 접수된 보고와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제의와 일반적인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제의와 일반적인 권고는 협약당사국의 논평이 있을 경우 이 논평과 함께 총회에 보고된다.

### 제10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2. 위원회는 자체의 임원을 2년 임기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사무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마련된다.
4. 위원회의 회합은 통상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다.

### 제11조

1. 협약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지 않는 기타 협약당사국이 있다고 간주할 때는, 이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사실을 당해 협약당사국에 전달한다. 3개월 이내에, 당해 협약당사국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문서로 된 해명서 또는 성명서와 더불어 동국이 구제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면 그 구제조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2. 만약 이 문서가 당해 국가에서 1차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쌍무교섭이나 또는 양자에게 가능한 다른 절차 중 어느 한 수단에 의하여 양측에 동등하게 납득 되도록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측 중 어느 일방은 위원회와 상대방 국가에 통고함으로써 위원회에 재차 이 문제를 회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3. 위원회는 어느 문제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가 취하여져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본 조 2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그 문제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것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데 대한 규칙이 될 수 없다.

4. 위원회는 자신에게 회부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당해 협약당사국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 본 조에서 언급된 문제가 위원회에 의하여 심의되고 있을 때에는 당해 협약당사국은 동 문제가 심의되는 동안 대표를 파견하여 투표권 없이 위원회의 의사절차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

1. 가. 위원회가 자신의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를 획득하여 비교 대조한 후에 위원장은 5명으로 구성되는 임시 조정위원단 (이후 "위원단"이라 함)을 임명한다. 이 위원단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위원일수도 있으며 또 위원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위원단의 구성원은 분쟁당사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위원단의 주선은 이 협약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문제를 호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 협약당사국에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 나. 분쟁에 관련된 협약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단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분쟁에 관련된 협약당사국에 의하여 합의되지 못한 위원단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비밀투표에 의해 2/3이상 다수표로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2. 위원단의 구성원은 개인자격으로 집무한다. 이들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 협약의 비협약당사국 국민이 되어서도 안된다.
3. 위원단은 의장을 선출하며 자체의 의사 규칙을 채택한다.
4. 위원단의 회합은 통상 국제연합 본부 또는 위원단이 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5. 이 협약 제10조 3항에 따라 마련된 사무국은 협약당사국간 분쟁으로 인하여 위원단이 구성될 때 동 위원단의 사무국으로 이용된다.

6. 분쟁에 관련된 협약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제공되는 추계에 따라 위원단 구성원의 모든 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한다.
7. 사무총장은 위원단 구성원의 경비를 본 조 6항에 따라 필요하다면, 분쟁에 대한 협약당사국이 지급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8. 위원회가 획득하여 비교 대조한 정보는 위원단에서 이용 가능하며, 위원단은 당해 협약당사국에게 기타 관련정보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

1. 위원단은 문제를 충분히 심의하였을 때,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당사국간 쟁점에 관련된 사실의 모든 문제에 관한 조사결과와 분쟁의 호의적 해결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권고를 내포하고 있다.
2. 위원의 위원장은 위원단의 보고서는 분쟁에 관련된 각 협약당사국에게 전달한다. 이 당사국은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단의 보고서에 내포된 권고의 수락 여부를 통고한다.
3. 본 조 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위원단의 의장은 위원회의 보고서와 당해 협약당사국의 선언을 이 협약 타 협약당사국에게 전달한다.

### 제14조

1. 협약당사국은 어느 때라도 동 협약당사국에 의한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또는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그 관할권내에서 통보를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승인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협약당사국에 관련되는 통보는 위원회가 접수하지 아니한다.
2. 본 조 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선언을 한 협약당사국은 자국 법질서 범위 내에서 어느 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지정하여, 이 기관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위반의

-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가능한 국내 구제조치를 완료할 개인과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그 관할권내에서 청원을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가지도록 한다.
3. 본 조 1항에 따라 취해진 선언과 본 조 2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의 명칭은 당해 협약당사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들의 사본을 타 협약당사국에게 전달한다. 소년은 어느 때라도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철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철회가 위원회 앞으로 계류되어 있는 전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청원의 등록은 본 조 2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에 의해 보관되며, 이 등록의 인증등본은 내용이 공표되지 않는다는 양해아래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매년 사무총장에게 보관된다.
  5. 본 조 2항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만족스러운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청원자는 6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위원회에 전달할 권리를 보유한다.
  6. 가. 위원회의 자신이 받은 통보사항에 대하여 본 협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협약당사국의 주의를 은밀히 환기시킨다. 그러나 해당 개인이나 또는 개인집단의 신원이 자신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밝혀져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익명으로 된 통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 나. 3개월 이내에 접수국은 동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이나 혹은 성명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한 자국이 취한 구제조치가 있으면 그 구제조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7. 가. 위원회는 당해 협약당사국과 청원자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를 감안하여 통보를 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청원자가 모든 가능한 국내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지 않는 한 청원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심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데 대한 규칙이 될 수는 없다.
    - 나. 위원회는 당해 협약당사국과 청원자에게 제의와 권고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제의와 권고를 한다.
  8. 위원회는 그 연차 보고서 속에 이러한 통보의 개요와 적절한 경우 당해 협약당사국의 설명 및 성명과 위원회 자신의 제의와 권고의 개요를 포함시켜야 한다.

9. 위원회는 이 협약 협약당사국 중 최소한 10개국 이 본 조 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에만 본 조에 규정된 기능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다.

### 제15조

1. 1960년 12월 14일자 총회결의 1514(XV)에 포함된 식민제국 및 민족의 독립허용에 관한 선언의 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 협약의 규정은 타 국제기관이나 또는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에 의하여 이 민족들에게 허용된 청원권을 결코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가. 이 협약 제8조 1항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국제연합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청원의 사본을 접수하고 또한 동 기관에 이러한 청원에 대한 명시적인 의견과 권한을 제출한다. 여기의 국제연합소속기관은 자신 앞에 회부되어 있고 이 협약에 포괄된 문제와 관련하여 총회결의 1514(XV)가 적용되는 신탁통치 및 비자치영역과 모든 기타영역의 주민들로부터의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제 원칙과 목적에 관한 사항을 직접 취급한다.
  - 나. 위원회는 본 항 가호에 언급된 영역내에서 행정권에 의해 적용되는 이 협약의 제 원칙과 목적에 직접 관련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조치에 관한 보고서의 사본을 국제연합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명시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이러한 기관에 대하여 권고를 한다.
3. 위원회는 총회에 대한 보고서 속에 국제연합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청원과 보고서의 개요를 포함시키고, 또한 동 청원과 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명시적인 의견과 권고를 포함시킨다.
4. 위원회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으로부터 이 협약의 제 목적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본 조 제2항 가호에 언급된 영역에 관하여 사무총장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요청한다.

제16조 분쟁이나 이의의 해결에 관한 이 협약의 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

기구의 조직 법규 속이나 또는 국제연합 그 전문기구에 의해 채택된 협약 속에 규정된 차별에 관련된 분쟁이나 또는 이의를 해결하는 다른 절차를 침해함이 없이 적용되며, 또한 협약당사국이 자기들 사이에 유효한 일반 또는 특별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절차를 채택함을 막지 아니한다.

### 제 3 부

#### 제17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 및 국제연합 총회로부터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권유를 받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제18조

1. 이 협약은 협약 제17조 1항에 언급된 어떠한 국가의 가입에도 개방된다.
2.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9조

1. 이 협약은 27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30일 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2. 27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국에 대하여서는 이 협약이 동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 후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20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이나 또는 가입 시 당사국이 행한 유보를 접수하여, 이 협약의 기존 협약당사국이나 또는 협약당사국이 되는 모든 국가에게 회람한다. 이러한 유보에 반대하는 국가는 동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국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2. 이 협약의 목적 및 취지에 용납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이 협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운영을 저해하는 효력을 가진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최소한 이 협약의 협약당사국 중 2/3가 유보를 반대할 경우 동 유보는 용납될 수 없거나 또는 저해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유보의 철회는 그 뜻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어느 때라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는 접수된 날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협약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이 협약의 해석이나 또는 적용에 대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협약당사국 간 분쟁이 교섭이나 또는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때 이 분쟁은 분쟁당사국이 타 해결방법에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당사국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 재판소에 회부하여 판결토록 한다.

## 제23조

1. 이 협약의 개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협약당사국이 어느 때든지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이러한 개정 요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제24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 제17조 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게 특히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 가. 제17조 및 제18조 하의 서명, 비준 및 가입
- 나. 제19조 하의 이 협정 발효일
- 다. 제14조, 20조 및 23조 하의 접수된 통보 및 선언
- 라. 제21조 하의 폐기

### 제25조

1. 이 협약의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 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이 협약은 국제연합 문서보존서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협약 제17조 1항에 언급된 부류에 해당되는 모든 국가에 전달한다.
6.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본 협약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세계인권선언은 차별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제반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후원하에 체결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제 국제협약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의해 채택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

하는 결의, 선언 및 권고에도 유의하고,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기하고, 궁핍한 상황하에서는 식량, 건강,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와 기타의 필요에 있어 여성이 가장 혜택받기 어려운 점을 우려하고, 형평과 정의에 기초를 둔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이 남녀평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인종 격리정책,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침략, 외국의 점령 및 지배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등의 제거가 남성과 여성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의 강화, 국제긴장의 완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체제에 관계없이 국가간의 상호 협력,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 특히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핵군축,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 평등 및 호혜의 원칙의 확인, 외국의 식민 지배와 외국의 점령하에 있는 인민의 자결권 및 독립권의 실현 그리고 국가주권 및 영토보전에 대한 존중 등이 사회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완전한 평등의 성취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현재까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여성의 지대한 공헌, 모성의 사회적 중요성 및 가정과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명심하며 또한 출산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동의 양육에는 남성, 여성 및 사회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함을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제 원칙을 이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모든 형태 및 양태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부

### 제 1 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 제 2 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 (가)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
- (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 (다) 남성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 있는 국내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을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확보할 것
- (라)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 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하며 공공 당국과 기관이 동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 (마)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 제 3 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4 조

1.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 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제 5 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나)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 제 6 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2 부

### 제 7 조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 기구  
에의 피선거권
- (나) 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 (다)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

### 제 8 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또한 아무런 차별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그  
들 정부를 대표하며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 제 9 조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

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 제 3 부

### 제 10 조

당사국은 교육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 (나)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 (다)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 (라)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마)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바)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찌기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 (사)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아)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 제 11 조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 (나)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 (다)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 (라)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 (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바)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 (나)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 (다) 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 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 (라) 임신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3. 본조에 취급된 문제와 관련한 보호적 입법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정, 폐기 또는 연장되어야 한다.

## 제 12 조

1.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 13 조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가족급부금에 대한 권리
  - (나) 은행대부, 저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대한 권리
  - (다) 레크레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제 14 조

1. 당사국은 시골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부문에서의 노동을 포함하여 시골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골여성에게 본 협약의 제 조항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시골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골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시골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하는 것
  - (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
  - (다)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
  - (라)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문자 해독능력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 비공식 훈련 및 교육과, 특히 지역사회교육 및 특별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
  - (마) 취업 또는 자가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있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집단 및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 (바) 모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 (사)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공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지 및 농지개혁과 재정착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 (아)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등과 관련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것

## 제 4 부

## 제 15 조

1.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능력 및 동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히 취급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
4. 당사국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 16 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나)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다) 혼인증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 (라)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마)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 (바)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사)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 (아)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2.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효과가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공공등기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5 부

### 제 17 조

1. 본 협약의 이행상 행하여진 진전을 심의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협약의 발효시에는 18인, 그리고 35번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는 23인의 본 협약의 규율분야에서 높은 도덕적 명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구성한다. 동 전문가는 당사국에 의해 그들의 국민중에서 선출되어 개인 자격으로 봉사하여야 하며, 선출에 있어서는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형태가 대표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2.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사국에 의해 지명된 자의 명부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각 당사국은 그 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3. 최초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행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 3개월 이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2개월 이내에 그들의 지명자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전원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그들을 지명한 당사국을

- 명시하여, 작성하여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위원회 구성원의 선거는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어 국제연합본부에서 열리는 당사국회의에서 행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정족수를 구성하는 동 회의에서 참석 및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한 피지명자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출된다.
  5. 위원회의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러나 최초선거에서 선출된 구성원중 9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되며 최초선거후 즉시 동 9인 구성원의 명단을 위원회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6. 위원회는 추가 구성원 5인의 선거는 35번째 비준 또는 가입후 본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동 기회에 선출된 추가 구성원중 위원회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 2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된다.
  7. 불시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국의 전문가가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종료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 국민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
  8.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회가 승인하고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9.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협약에 따른 위원회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한다.

## 제 18 조

1. 당사국은 그들이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진다. 즉,
  - (가) 관계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제출하며
  - (나) 그 이후에는 최소한 매 4년마다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2. 보고서에는 본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애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제 19 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2년임기의 자체직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 20 조

1. 위원회는 본 협약 제18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주를 넘지 않는 기간동안 정규로 회합한다.
2. 위원회 회의는 국제연합본부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편리한 장소에서 정규로 개최된다.

#### 제 21 조

1. 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및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동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용으로 여성지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 22 조

전문기구는 본 협약 규정중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시행에 대한 심의에 참가할 권한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에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제 6 부

### 제 23 조

본 협약상 어떠한 것도 아래에 포함될 수 있는 남녀평등의 달성에 더욱 이바지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령 또는

(나) 동 국에 대하여 발효중인 여하한 기타 국제협약, 조약 또는 협정

### 제 24 조

당사국은 본 협약상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 제 25 조

1.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3.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4.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제 26 조

1. 본 협약의 개정요구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의 방법으로 당사국이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총회는 동 요구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 제 27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본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각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 제 28 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에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2. 본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 제 29 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둘 또는 그 이상 당사국간의 분쟁이 직접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들중 하나의 요구가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재판 요구일로부터 6개월이내 당사국이 중재재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당사국중 일방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부합하는 요청에 의해 동 분쟁을 국제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동국이 본조 제1항에 기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전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3. 본 조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 제 30 조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는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 7. 아동권리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11. 20. 유엔총회 채택

1990. 9. 2. 효력발생

1991. 11. 20. 비준서 기탁

1991. 12. 20. 대한민국 효력발생

##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 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상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포함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 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 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 규정, “소년법운동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표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 시 및 무력충돌 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소년”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 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

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확인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관계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

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전부를 법률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 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

- 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 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 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  
여만 구속된다.

####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는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이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만 제한될 수 있다.

##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의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

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차·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조치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족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이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적절한 경우에 양자 또는 다자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여부에 관계 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훈련·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 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 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향,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에 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 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와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권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 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관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서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중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이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 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30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

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한다.

###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라.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내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적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이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 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는다.
    -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3)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 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 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 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 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

원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 제 2 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의 위원은 명단은 최초 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천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 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 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 사회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의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의 국제협약을 장려하기 위하여

-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 제 3 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

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 시 각국이 행한 유보조항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 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 부록 2. 경찰인권 매뉴얼 교수기법 예시

[출처 : 고상준, 김희은, 이승미, 장윤경, 표창원 공저, “경찰대상 인권교육가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 1. 인권감수성 키우기1 - 경찰과 시민

**전개 (130분)**

**시민을 보는 경찰의 눈(40분)**

▶ **목표** : 경찰의 업무특성상 특히 인권침해상황을 빈번하게 일으킬 여지가 있는 시민과 시민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고객으로 보도록 한다.

▶ **진행과정**

- 1) 6인 1조로 나눈다.
- 2) 전지와 마커를 나누어 준다
- 3) 경찰을 중심원에 놓고 둘레에 2-3개의 원을 그려서 경찰에 가까운 시민부터 먼 시민에 이르기까지 관계하는 모든 시민목록을 만든다
- 4) 그 목록에다 잠재적 범죄자로 보여지는 시민은 빨간 색, 고객은 파란색으로 별 관심이 없는 시민은 노란색 표시를 한다.
- 5) 잠재적 범죄자로 보여지는 시민을 고객으로 대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한다

▶ **준비물**: 전지, 마커, 크레파스, 테이프.

## 활동내용

### 전개 (20분)

### 난동을 부리는 시민 1 (20분)

- ▶ **목표** : 시민과의 불가피한 충돌이 일어나는 딜마상황을 예화를 가지고 연습한다
- ▶ **진행과정**:
  1. 진행자예화를 들려준다.
  2. 갈등상황의 기준을 알려주고 핵심개념을 익히게 한다.
  3. 인권지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 지 토론한다.
  4. 진행자용자료를 나누어주고 이런 기술훈련이 가능한지 토론한다.
- ▶ **준비물**: 진행자 자료

### 진행자용 교수자료 1

- (1) 1. 치안센터(옛 파출소)에서의 취객 난동
- 4명의 취객이 서로 싸우다 치안센터에 찾아와 시비를 가리려 하던 중 다시 서로 폭력을 행사.
  - 이를 말리던 50대 초반의 경사 민원담당관이 이 4명의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집기들이 부서지는 피해 발생, 순찰지구대에 지원 요청.
  - 6명의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소리를 질러대며 저항하고 난동, 경사 민원 담당관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부서진 집기 사이에 쓰러져 있음.
  - “감히 경찰관서에 들어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었으니 흠씬 두들겨 주어 본 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김순경, 박경장의 강한 주장 v.s. 화가 나고 어이없지만 죄책은 나중에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처리를 하고 지금은 수적 우세를 이용한 위압으로 취객들을 제압 진정시킨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가급적 물리

력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순경의 생각 사이의 갈등.

- 경찰활동의 국제적 규범인 세계인권선언문과 UN의 경찰행동강령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경찰 10대 인권지침에서 해답 도출.

### [인권지침 3]

경찰관은 오직 법이 허용하는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더라도 상황에 따른 필요최소한 정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2. 음주단속 검문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차량

- 총을 쏘지 않으면 제지, 검거가 어려운 상황.
- 과연 총을 쏘아 검거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원을 요청하고 수배조치를 취해야 할까?
- 경찰활동의 국제적 규범인 세계인권선언문과 UN의 경찰행동강령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경찰 10대 인권지침에서 해답 도출.

### [인권지침 5]

경찰관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 등 살상용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활동내용

전개 (20분)

저항하는 시민 2 (20분)

- ▶ 목표: 시민과의 불가피한 충돌이 일어나는 딜레마상황을 예화를 가지고 연습한다

▶ **진행과정:**

1. 진행자예화를 들려준다
2. 갈등상황의 기준을 알려주고 핵심개념을 익히게한다.
3. 인권지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지 토론한다

▶ **준비물: 진행자자료**

(3)

(4)1. 검문검색을 피해 달아나는 불법시위 혐의자

- 반미와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불법폭력집회가 예상되자 경찰에서는 기동대로 하여 금 경계근무 및 검문검색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옷차림과 행색 등으로 보아 시위가담자임이 분명하고 들고 있는 가방 안에 시위용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자가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빠른 걸음으로 달아난다.
- 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가?
- 경찰활동의 국제적 규범인 세계인권선언문과 UN의 경찰행동강령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경찰 10대 인권지침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인권지침 6]**

경찰관은 법적인 근거 없이 어느 누구도 체포해서는 안 되며, 체포를 할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5) 2. 불법 시위 상황에 대한 대처

- 외국 대사관 앞에서 외국 국기를 불태우는 불법집회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 이를 해산하려하자 시위대는 미리 준비한 오물을 경찰관들에게 끼얹고 과격하게 저

향하여 사회혼란과 외교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 이 때 경찰봉과 방패 등 장비들을 최대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것이 바른 경찰활동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록 불법적이고 다소 폭력적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인내심을 발휘하여 상황을 통제하고 준법을 촉구하며 자진해산을 유도해야 하는가?
- 경찰활동의 국제적 규범인 세계인권선언문과 UN의 경찰행동강령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경찰 10대 인권지침에서 그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 [인권지침 4]

경찰은 불법적이지만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통제할 때에는 가급적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폭력적인 집회를 해산할 때에도 오직 필요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하여야 한다.

#### 활동내용

#### 정리 (10분)

####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10분)

- ▶ 목표: 마지막으로 학습을 바탕으로 시민을 고객으로서 볼 수 있는 다짐을 한다.
- ▶ 진행과정:
  1. 편지지를 나누어 준다
  2. 시민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들,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쓴다.
  3. 2-3명 정도를 읽게 한다.
- ▶ 준비물: 편지지, 볼펜

## 2. 인권감수성 키우기 2 - 경찰과 여성

## 활동내용

전개 (110분)

여성이 이럴수가? (30분)

- ▶ **목표** :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동료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된다는 점을 알게 한다.
- ▶ **진행과정** :
- 1). 성별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한다.
  - 2). 6인 1조로 나눈 후 다음 작업설명을 한다.
    - 각 조는 성별역할에 관한 쟁점이 담긴 사례를 받을 것이다.
    - 각 사례의 해결 방법을 같이 의논하고 발표 준비를 한다.
    - 각 조가 발표한 것에 대해 다른 조 및 학습자들이 반대할 수 있고 발표조는 자신들의 해결방안을 설득하기 위해 논증할 수 있다.
  - 3). 논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충분히 토론이 되면 다음 조로 넘어간다.
  - 4). 토론거리
    -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남자나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 남자나 여자들은 성별역할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왜 그런가?
    - 어떤 성별역할의 변화가 사회적 관계나 가정, 일터에서 남자와 여자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는가?
    - 우리의 부모 세대는 같은 해결점을 제시할까, 다른 해결점을 제시할까?
    - 어떤 사례가 가장 어려웠나? 왜?
    - 남성의 성별역할 중 한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변화시키겠는가? 여자의 경우는?

## ▶준비물 : 진행자자료

## 진행자용 자료

## 성별역할 사례

1. 영수가 미연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을 때 미연이 그에게 다가와서 “영수야,, 새 영화가 개봉했는데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영화야. 난 너랑 영화를 보러가고 싶은데 토요일 저녁에 바쁘니?”라고 말했다. 영수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같이 극장에 가고 싶었지만 그녀가 먼저 신청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2. 은지는 강력반형사로 승진할 수있는 자격을 얻었다. 은지는 너무나 기뻐서 윤철에게 달려가 말했다. 그들은 가을에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일로 좋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윤철이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매우 침울해 했으며 잠시 후 이야기를 했다. “난 강력반형사 은지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가 선택할 문제야.” 은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3. 영철이는 자신의 조카의 생일에 인형을 사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동료 성수는 “안돼”라고 말한다. 영철은 인형이 어린 남자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수는 인형은 남자아이를 ‘계집애’같이 만든다고 반박한다. 영철이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성수가 친구들에게 뭐라고 할지 걱정이다. 영철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4. 영희와 철수는 몇 달째 사귀는 중이고 모든 게 그럭저럭 잘 되어갔다. 그녀의 부모는 철수를 허락했고 그녀가 철수의 여자라는 소문이 학교에 퍼졌다. 그런데 최근에 철수는 그녀에게 예비시부모에게 잘 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번 겨울에 김장을 같이 담그라고 종용한다. 그녀가 “싫어”라고 말하면 그는 남자와 그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뭐라고 해야할까?
5. 가희와 지훈은 거의 일년동안 사귀어 왔다. 지훈이 항상 돈을 내고,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 왔다. 그들은 모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용돈이 넉넉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훈이 데이트비용을 냈다. 그래서 지훈은 같이 내자고 했지만 가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희는 남자가 데이트비용을 내야한다고 말한다. 지훈은 가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활동내용
------

전개 (110분)
-----------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20분)
--------------------

- ▶ **목표** : 일터에서 발생한 남성권위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양성평등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 **준비물** : 진행자자료

활동내용
------

정리 (20분)
----------

인권지침에 따라 합니다, 인권지침(20분)
-------------------------

- ▶ **목표** : 현장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딜레마상황에서의 인권지침을 학습한다.
- ▶ **진행과정** :
  - 1) 딜레마 상황을 주고 토론한다
  - 2) 조별로 발표한다

진행자용 교수자료
-----------

오만불손한 성폭행 피해자 Z양

- 20대 무직인 Z양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아와 중년의 기업체 간부인 A씨를 고소하였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혼자 산부인과에 가서 증거를 채취하고 진단서를 받아오는 등 당돌한데다 경찰관의 질문에 도전적이고 반항적으로 응대하며 ‘혹시 저놈 편드는 게 아니냐’며 히스테리 반응을 보여 담당 형사인 김경사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Z양은 술에 취해 새벽2시에 혼자 길에 앉아 있었고, 가해자 A씨가 이를 발견, 부축하여 도움을 제의하다가 함께 여관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A씨는 ‘합의해 놓고 나중에 마음이 변해 저런다, 돈을 노리는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조신하지 못한 행실이나 경찰에서의 오만한 태도 등 Z양을 동정하고픈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담당형사인 김 경사는 갈등을 느끼게 되었다. 사건은 법대로 처리 하더라도 평소 잘 아는 출입기자에게 이야기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Z양이 사회적 심판과 비난을 받게 하고싶은 마음이 들었다.

- 피해자는 그 성격과 행실, 외모나 태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경찰관의 사적인 감정과 판단은 사적인 마음에만 담아두고 이를 업무에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갈등상황에 대한 답은 경찰활동의 국제적 규범인 세계인권선언문과 UN의 경찰행동강령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경찰 10대 인권지침에서 도출될 수 있다.

#### [인권지침 2]

경찰관은 모든 범죄 피해자를 ‘연민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특별히 그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 3. 인권감수성 키우기 3 - 경찰과 외국인

## 활동내용

## 전개 (110분)

## 우리안의 외국인(30분)

- ▶ 목표 : 이미지는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어떠한 개념에 대해 그리고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저마다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 객관화하고 그것이 형성된 경위를 살펴본다.
- ▶ 진행과정 1 : “외국인”에 대하여
  1. 진행자(교사)는 “저기 외국인이 지나간다.”라는 문장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를 물어본다.
  2. 인종/ 성/ 나이 라는 세 범주로 분류해 자기가 떠올린 사람이 각각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손을 들어보게 한다.
  3. 그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본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아시아인들이 대부분인데 떠오르는 이미지의 대부분이 왜 서양인인가? 서양인 중에서도 왜 흑인 여자 아이 같은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는가?
- ▶ 진행과정 2: 연상 이미지
  1. 특정한 나라 또는 지역을 골라 참가자로 하여금 거기에서 연상되는 시각적 이미지나 단어 등을 각자 적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모아서 빈도 수를 뽑아본다.
  2. 그 이미지 사이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또는 모순된다고 여겨지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 그러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요소들은 서로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생각해본다.
  3. 자신 또는 우리에게 그러한 이미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왔는지를 분석해 본다.

## ▶ 진행과정 3: 풍경 알아 맞추기 퀴즈

1. 외국의 여러 나라들의 풍경을 다양하게 구하여 그 가운데 10개 정도를 추려낸다. 어느 나라 풍경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과 애매한 것, 그리고 우리의 통념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을 골고루 섞어서 배열한다.
2. 학습자들은 10개의 풍경이 각각 어느 나라 것인지를 알아맞힌다. 이 경우 주관식으로 할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자 점수를 계산해 본다.
3. 가장 많이 맞춘 것부터 가장 많이 틀린 것까지 순서대로 배열해 본다. 그리고 그렇듯 친숙한 이미지의 경우 왜 그렇게 자주 접하게 되고, 낯선 이미지의 경우 우리가 왜 자주 접하지 못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본다.

## ▶ 진행과정 3: 다른 나라말 알아맞추기

1. 다른 나라말들을 녹음한다
2. 어느 나라 말인지 알아맞추는 게임을 한다

(사)또 하나의 문화, 글로벌시민교육 매뉴얼 및 자료집, 2001년

<b>진행자용 자료1</b>
-----------------

말해요, 찬드라

찬드라 언니는 밥을 사 먹고 밥값을 내려고 보니까 주머니에 있던 돈이 없어졌더라. 그 음식점 주인이 얼마나 인정머리 없던지 그까짓 몇천 원을 못 받았다고 경찰서에 신고 해버렸다. 이 경찰도 되게 웃긴다. 외국인이라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그것도 모르고 정신박약행려자라고 정신병원에 넣어 버렸다. 또 병원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무리 집에 가게 해달라고 울며 매달려도 정신병자 헛소리라며 귀담아 듣질 않았다. 그

렇게 흐른 시간이 장장 육년 사개월이다. 그 긴 세월을 언니는 눈물로 보냈다고 했다.

이란주, 말해요, 찬드라, 삶이 보이는 창, 2003년

### 활동내용

전개 (110분)

‘너도 다른 나라에 살아봐야해’ (30분)

- ▶ **목표** : 차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해한다.
- ▶ **진행과정** :
  1. ‘외국인’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발표하게 한다.
  2. 미국으로 이민 온 한 10대 소녀의 시를 자원자로 하여금 읽게한다.
  3. 시에 대한 느낌을 나눈다. 특히 노이 슈가 이 시를 쓴 후 그녀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게 한다.
  4. 마치 우리가 그녀와 한 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녀에게 보내는 글 혹은 우리안의 외국인에게 보내는 글을 써본다.
- ▶ **준비물** : 칠판, 분필, 편지지, 볼펜, 진행자용 자료

### 진행자용 자료

#### 너도 다른 나라에 살아봐야 해.

노이 슈(Noy Chou)

아웃사이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  
 반 아이들은 모두 노란 머리카락인데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네가 혼자 앉아 있다면 어떻겠니?

선생님이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다 손들어요” 했을 때  
너 혼자 손을 든다면 어떻게?  
네가 손을 들면 아이들이 모두 너를 쳐다보고 놀린단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너도 다른 나라에 살아봐야해.

선생님이 너를 이곳에서 쪽 살아온 아이처럼 대할 때 어떻게?  
선생님이 빨리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오직 한 명, 바로 너 일 때,  
네가 천천히 말해 달라고 선생님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저학년으로 내려가”라고 빈정거린단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너도 다른 나라에 살아봐야 한다.

네가 다른 사람들과 정반대일 때 어떻게?  
네 나라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들은 너를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려면 너도 다른 나라에 살아봐야 해.

네가 언제나 따돌림을 당한다면 어떻게?  
너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널 괴롭힌다면 어떻게?  
네가 그들에게 그만 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너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이 너를 참을 수 없도록 괴롭히면 너는 선생님에게 그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린단다.  
선생님이 물어보면 그들은 너를 괴롭히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선생님은 네 옆에 앉은 학생에게 물으시지.  
그는 대답하지. “예, 그 애들은 재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요.”  
너는 그 사실을 증명해줄 증인조차 없단다.

그래서 선생님은 너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단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너도 다른 나라에 살아봐야 해.

너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겠니?

그들은 네 말을 이해하지 못할꺼야.

그들은 너를 비웃을 것이고 너는 그들이 왜 웃는지조차 모를꺼야.

그래서 너도 그들과 같이 웃기 시작하지.

그러면 그들은 말하지. "너는 돌았구나! 자기 자신을 비웃다니 넌 미쳤어"

이것을 이해하려면 너도 다른 나라에 살아봐야 해.

네가 길을 걷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너를 쳐다본다면 어떻게겠니?

네가 그것을 의식하게되면 얼굴을 가리고 싶겠지.

그렇지만 그들은 도처에서 너를 보기 때문에 너는 어디로 피해야할지도 모를꺼야.

이것을 이해하려면 너도 다른 나라에 살아봐야해.

### 활동내용

전개 (110분)

야임마와 영어선생님(20분)

- ▶ 목표 : 이주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하게 한다.
- ▶ 진행과정 :
  1.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지적한다.

2. 외국인 영어 선생님도 이주노동자임을 지적한다.
3. 한국인으로서의 다른나라로 이주한 노동자들에 대한 경험을 나눈다.
4. 이주 노동자정책에 대한 찬반토론을 한다

▶ 준비물: 진행자자료

**진행자용 자료**

1. 미등록노동자의 강제추방을 나흘 앞둔 11일,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 다라카씨가 달리는 지하철에 몸을 던져 4년여의 고된 한국 생활을 마감했다. 1996년 1월 11일 ‘코리안 드림’을 안고 입국한 그는 월급 1백만원 중 70여만원을 자국에 송금하면서도 맡은 일을 묵묵히 해온 성실한 노동자였다. 하지만 ‘불법체류 4년 이상자’라는 한국 정부의 낙인이 서른한 살의 다라카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로써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본격적인 시작도 하기 전에 노동자의 차가운 피로 얼룩지고 말았다.

지난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두달 반 동안, 정부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합법화한다’는 미명 아래 체류기간에 따른 선별작업을 강행했다. 체류기간 4년 미만자들에게는 합법화 신청서를 강요했고, 4년 이상자에게는 ‘출국’이라는 마지노선을 그었다. 그리고 엄포했다. 자진출국 기간 이후인 11월 16일부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무부·노동부·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하겠노라고.

이제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한 세 번의 근로계약 후엔 본국으로 돌아가 1년을 기다려야 재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사용자의 도장 하나에 목을 내놓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처지다.

2. 성은 ‘야’ 이름은 ‘임마’.

몇 해 전만 해도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한국 이름을 그렇게 설명했다.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그놈의 ‘추방’이라는 딱지 때문에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야 했던 이주노동자들, 이들이 드디어 고개 들어 참았던 분노를 토해내고 있다. 11월 15일 이후 대대적으로 실시될 4년 이상 체류자에 대한 정부 단속, 이주노동자들의 표현을 빌려 ‘인간사냥’을 앞두고 힘을 모으고 있는 것.

이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온 이주노동자 낸시 그린씨도 고용허가제에 반대하고 있다. 전체 이주노동자의 절반가량인 장기체류자를 아무런 대책없이 범죄자로 낙인찍어 추방하려는 ‘고용허가제 자체가 범죄’라는 주장에도 거침이 없다. 더불어 캐나다에서 온 영어선생‘님’과 방글라데시에서 온 ‘야임마’를 대하는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이중성도 못봐주겠다고 말한다. 이주노동자가 본 2003년 한국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했다’(편집자 주)

월간 말 <2003년. 12월호 >

활동내용

정리 (20분)

경찰! 우리편이어야지(20분)

진행자용 자료

중소기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 어느 중소기업주가 자기 회사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불법체류자)로 고발하였고 그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1년간 일한 임금을 전혀 못 받고 갖은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다 결국 해고를 당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

구하니 업주가 신고를 한 것이라고 호소한다.

한국인 중소기업주는 담당 경찰관에게 외국인 노동자들 말은 결코 믿을 게 못되며 자신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가경제를 위해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 온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하면서 국가경제와 국민 보호를 위해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한 후 강제출국조치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다.

담당 경찰관의 마음속에는 “경찰은 ‘국민의 공복’이지 ‘외국인의 보호자’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과 “공정한 법집행자, 보편적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경찰관은 국적을 불문하고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야 하지 않나?”라는 두 가지 생각이 갈등을 일으킨다.

-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자. 우리 국민(경찰관의 가족, 친지)이 외국에서 외국 경찰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억울한 처분을 당한다면...? (멕시코, 미국, 중국, 일본에서의 사례 등) 경찰활동의 국제적 규범인 세계인권선언문과 UN의 경찰행동강령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경찰 10대 인권 지침은 이러한 갈등상황 해결에 도움을 주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인권지침 1]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히, 폭력과 협박의 위협에 처한 사람은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경찰관은 특히 어린이, 노인, 여성, 피난민, 가출인 및 사회적 소수 등 폭력과 협박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연구보고서 2006-01

##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 방안

2006년 11월 발행

2006년 11월 인쇄

발행인 : 이 병 진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88번지

인쇄처 : (주) 대한 피앤디  
(TEL : (02)2268-0458)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